

대부업 관리 · 감독 지침

2014.12

대부업정책협의회



목 차



I . 대부업법 조문별 해석	1
1. 제1조 목적	1
2. 제2조 등록대상	2
3. 제3조 대부업등의 등록절차	6
4. 제3조의2 등록갱신 신청의 처리	15
5. 제3조의3 등록증 반납	17
6. 제3조의4 대부업등 교육 이수	18
7. 제4조 등록 제한사유	20
8. 제5조 변경등록	24
9. 제5조의2 상호사용	28
10.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32
11. 제6조의2 중요사항 자필기재	37
12.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38
13. 제7조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40
14. 제8조 이자율의 제한	41
15. 제9조 대부조건에의 게시와 광고	46
16.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51
17.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52
18. 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54
19. 제9조의5 고용제한	55
20. 제9조의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55

21.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57
22.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57
23.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58
24. 제11조의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68
25. 제12조 검사	69
26.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4
27.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종결	80
28.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81
29.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84
30. 제16조 대부업 실태조사	89
31.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91
32. 제17조 등록 및 검사수수료	93
33. 제18조 분쟁조정	95
34. 제18조의2~7 대부업협회	97
35.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100
36.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	100
37. 제19조 벌칙	101
38. 제20조 양벌규정	101
39. 제21조 과태료	102
Ⅱ. 대부업체 감사지침 (시·도)	104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118
별첨 1.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사례	127
별첨 2. 관련 참고법령	149

I .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1. 목 적

【法律】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施行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업법의 제정취지

대부업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두어 양성화하고, 금융이용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02년도에 제정·시행됨

❖ 주요 개정 연혁

일 시	주요 개정내용
'05.05월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금지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중개금지 허위 대부광고 금지
'07.12월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금감원의 대부업 직권검사권 신설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근거규정
'09.01월	대부중개업자 및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명시 의무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자필 기재 의무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함 (연30%)
'10.01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고정사업장 요건 추가) 대부업체 종사자의 고용 제한 등
'12.12월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공정채권추심법 위반시 등록제한 등)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14.01월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 인하 대부중개업자의 손해발생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의 대외공개(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처분 내역 등의 공개의무 부과
'14.03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2. 등록대상

【法律】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施行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등'의 개념

가. '대부업'이란 기본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업법상 등록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등 대부행위에 대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가 업(業)으로서 성격을 지녀야 한다.

- ①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②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의 의미(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대부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자(전주)도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09.10월 경찰청·금감원]

나. ‘대부중개업’이란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질의회신 事例 : 대출중개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대출거래를 중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금전을 취한다면 대부중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한다. ('11.1.26)

☞ 질의회신 事例 : 무인대출자동화기기 사업자가 설치한 무인대출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고객이 대출신청을 하고, 동 대출신청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10.5.17)

다. '09.4.22.부터 다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추심전문업자(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도 대부업으로 보아 등록의무 대상이 된다.

-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추심 부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예) 甲이 금융회사(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직접적 채권추심 대신 A신용정보 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甲은 기본적으로 대부업 등록대상이 된다.

- ②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동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 매매각 행위만을 하는 것은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예: 상사매출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09.4.22. 개정법안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09.4.22. 이전에 매입한 채권만 가지고 추심하는 업자도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부칙 규정)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④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나.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다.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조제1항 단서)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해당한다.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상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으로 보아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된다.

【참고】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및 해석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등을 “업으로”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 1) 금전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금전의 금전이자에 상당하는 것(쌀, 상품 등)을 받는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으로 본다.
- 2) 다만, 주된 사업(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보조수단(마케팅, 금융지원 등)으로써 대부 행위를 병행하되 금전이자를 받지 않는 등,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

☞ 질의회신 事例 : 가스충전소가 주된 사업인 가스충전 거래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택시 기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 등록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10.7.9)

나. ‘동종의 행위’는 대부 또는 대부의 중개를 의미하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의미한다.

다. ‘반복.계속적’으로 할 것. 대부 행위 등을 실제로 ‘반복.계속적’으로 한 경우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부 행위 등을 반복.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로 하는 행위라면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적’에 해당한다. 다만 1인에게 1회 금전을 대여하여 이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영리의 목적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반복.계속적’의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직후 6개월 동안 다수의 대부행위(동일 대출이 수차례 연장 또는 갱신된 때에는 1건으로 취급)가 있을 경우

라.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광고 등)할 수 있어야 한다.

☞ 비록 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더라도 1인에게 단 1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1972.10.4. 제2특별부판결)

3. 대부업등의 등록 절차

【法律】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을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의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된 영업소 외에 다른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었는지 여부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2조의2(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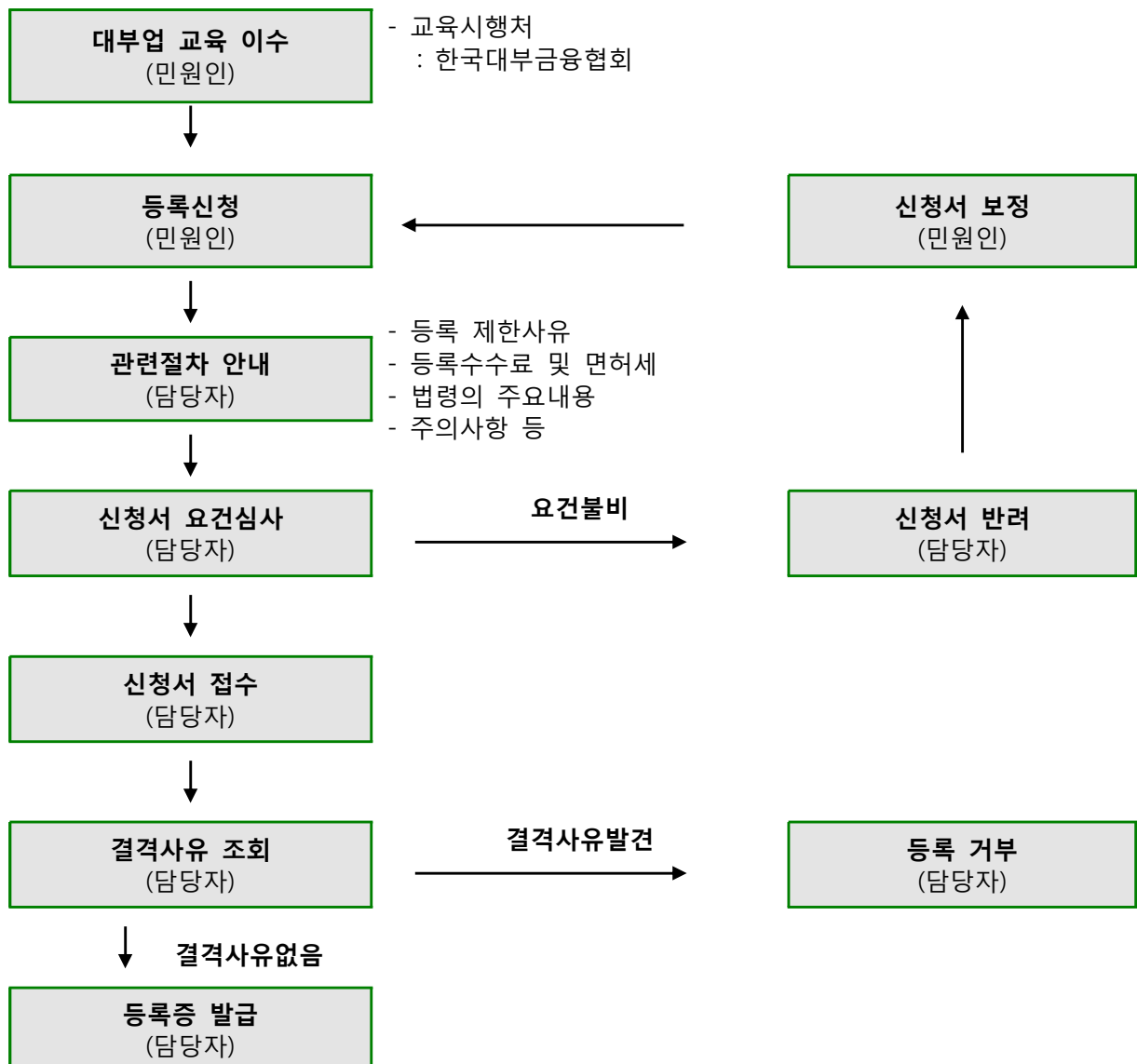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등록업무 담당기관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한다)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시·도지사가 조례 등에 의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그림 Ⅲ-1> 등록절차의 흐름



❖ 등록신청서

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별지 1호 서식’(법인·개인)을 사용하며, 서식의 기재 상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나. 등록신청 구분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모두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부분에 모두 체크해서 신청한다.

다. 등록신청인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도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공동등록을 하지 못한다.

☞ 질의회신 事例 : 3개의 법인 대부업체가 동일 번지, 동일 사업장에 공통의 업무총괄사용인 1인을 고용하는 것은 3개 법인이 사실상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한된다. (‘09.5.20)

라.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 경우에는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질의회신 事例 : 동일 주소, 동일 사업장에 동일인이 상호를 달리하여 각각을 본점으로 2개의 대부업을 등록하는 것은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한다. (‘09.5.20)

마. 대부광고에 전화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광고용 전화번호는 3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바.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질의회신 事例 : 전화번호 등록시 타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개인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인 대부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9.5.20)

사. 영업소 소재지는 법 제4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등록신청의 처리

가. 시·도는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 또는 임원(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이 법 제4조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범죄경력조회)과 다른 시·도(행정처분 조회)에 조회한다.

☞ 법령에 각종 임원 선임, 등록·신고 등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가 가능하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의견회신, '09.12.31)

※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나. 등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 등록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및 중복상호 여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부에 신청서 기재사항,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처리기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4일로 한다)

☞ 질의회신 事例 : 신청인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에 영업소로 기재한 장소가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되는 용도에 해당된다면, 이는 대부업 등록 관련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8.6)

①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법 제3조제3항제1호 참조)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 및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조의4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제출받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받는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항)

③ 「시·도행정정보시스템」(시·군·구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내 「대부업등록 관리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등록부 기재에 갈음한다.

다. 등록증 번호는 「등록(갱신)연도(2자리)-등록지자체(광역·기초)-고유발급번호(숫자 4자리)」 형식으로 기재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한다. 새로운 등록증 번호 형식의 표기는 신규·갱신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증 재발급 행위부터 적용한다. (권고)

☞ (예) 2010-서울강남-0001 → 「10-서울강남-0001」, 경기 제43호 → 「11-경기안양-0043」,
대전-2544 → 「09-대전-2544」, 2009-경북포항-23(대부) → 「09-경북포항-0023」

❖ 등록부 공개

가. 등록부 기재사항 중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청 홈페이지 및 「등록 대부업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① 공개되는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 등), 상호, 등록일자, 대표자, 사업장 주소, 영업용 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한다), 영업내용(대부, 중개)이다.

② 다만, 등록신청인의 주소,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사용인의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한다. 또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 대부업 통합조회시스템」을 시·도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의 방식으로 연계하여 금융이용자가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권고)

㉘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㉙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⑩, ㉓, ㉔, ㉕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⑩, ㉕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등록갱신 신청의 처리

【法律】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2조의4(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 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등록갱신 신청의 처리

가. 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등록갱신 신청하는 경우도 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① 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4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등록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③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의 기재사항 내용의 변경 유무를 확인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가.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등록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 (예) 등록일이 '09.10.1.인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12.10.1. / 갱신신청 기간 '12.7.1.~'12.9.1.

나. 갱신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갱신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으로 한다.

* (예) 기존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09.10.1~'12.10.1이고, '12.8.1일에 등록갱신을 하였다면
→ 갱신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2.8.1~'15.8.1이 된다.

다. 갱신신청 기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라. 갱신신청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기존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신규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의 행위는 미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5. 등록증 반납

【法律】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등록증의 반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에는 대부업등을 등록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한다.

❖ 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가. 대부업자등은 분실 즉시 분실신고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분실한 대부업자등이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분실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분실한 경우, 시·도지사는 분실신고 처리로 별도 재발급 행위없이 종료한다.

다. 대부업자등이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분실해서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으로부터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받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6. 대부업등 교육 이수

【法律】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2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려는 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 후, 등록기관에 등록(또는 등록갱신)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대부업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은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한다.(법 제18조의7)

①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등록 및 등록갱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영 제2조의3제2항)

② 교육 대상은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으로 하되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 업무총괄사용인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사용인(지점장, 지배인 등)을 말한다.

③ 다만, (1)천재지변, (2)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기관에 제출한다.

나.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을 겸영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아 새로운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한다.

7. 등록 제한사유

【法律】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施行令】

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 대부업등의 자격제한

가. 제4조에 열거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나.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이하).

* 다만, 법원에 의해 면책결정(일부 면책시 제외) 또는 복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도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 참고: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짐 등)되는 것

라. 대부업법 규정(전체)과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개정된 신용정보법('11. 9. 30)에서는 제50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7호 위반을 의미함

☞ 질의회신 事例 : 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이사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법 제4조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0.12.30)

☞ 질의회신 事例 : 현행법상 외국인의 외국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10.9.2), 재외국민이 향후 국내에 부재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국내 부재시에 금융이용자의 계속적인 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대부업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11.1.11)

마.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자진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후 5년 동안 등록이 제한된다.

☞ 질의회신 事例 : 법 제4조 제7호 규정은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동 규정이 도입 ('09.1)되기 이전에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면탈하고자 자진폐업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록 신청 시점이 폐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된다 ('10.12.31)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참고] 영업정지 받은 자의 폐업신청 후 신규등록 ('10.12.2 질의회신)

-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영업을 불가능하므로 동 사실을 대부업 등록 신청인에게 알리고, 당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대부업을 등록신청토록 행정지도함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시스템(시도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 자진 폐업 관련 사유(영업정지 처분, 경찰서 입건사실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부당행위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바. 제4조 제7호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例示

- ① 대부업자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 추심담당 부서 또는 업무를 관리·감독 했던 임원
- ② 이자상환을 위반한 경우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임원(최종결재자 등) 등
 - ☞ 질의회신 事例 : 등록취소된 법인의 단순임원인 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직접 책임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 제4조 제7호 괄호 내에서 규정한 제한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0.4.29)
 - ☞ 질의회신 事例 : 법인 대부업자의 단순임원(甲)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법인이 등록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乙)가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당해 법인을 등록취소에 이르게 한 임원의 행위가 당해 업체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乙)에게 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② 대표이사(乙)가 동 임원(甲)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니 아니하고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는지,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0.12.30)

❖ 대부업등의 요건제한

가.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대표자 명의를 아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되며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 질의회신 事例 :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되, 건물 소유주의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11.6.16)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인(최초 임대인)의 동의서(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10.8.31)

나.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분류된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있어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호텔 등 숙박시설의 지하 아케이드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된 사무실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두도록 명시한 대부업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주택을 고정사업장으로 두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변경등록

【法律】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가.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된 내용의 변경등록을 신청한다(별지 6호 서식). 다만,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총액이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광고용 전화번호를 추가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2.3.1일

부터는 대부업자등이 광고와 관련된 전화번호(또는 홈페이지 주소) 추가·변경사항에 대해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1회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내외)

다. 영업소가 본점 및 영업점의 통합 등으로 회사이름이나 대표·임원 등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영업점의 영업내용이나 고객관계 등에 큰 변동이 없다면 변경등록으로 처리한다. 이는 영업점의 영업이 지속성을 가짐에도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신규등록시까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이전)되는 경우, 대부업자등은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 ① 대부업자등은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기존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한으로 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 해당 대부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새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 ②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사실을 변경전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변경 전 시·도지사는 기존 대부업등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한다.

마. 갱신신청 기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바.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등 처리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시·군·구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⑮, ⑯란의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⑯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소재지 변경시에 해당하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9. 상호 사용

【法律】

제5조의2 (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行令】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 상 호

가. 대부업자 및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는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09.4.21일 이전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상호사용 특례가 '12.4.20에 모두 만료되므로 '12.4.21 이후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대부업자등의 상호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

다. 동일 주소, 동일 사업장에 동일인이 상호를 달리하여 각각의 본점으로 2개의 대부업을 등록하는 것은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된다.

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자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서민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형사처벌되므로 대부업자는 물론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유의하여 처리한다.

<유사상호 사용금지 관련 법령상 금융권 >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등)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9조(벌칙)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 에 관한법률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 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 를 위반한 자
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 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 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법률	법 제38조(상호) ① ~ ⑦ (생략) - 동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①금융투자 ②증권 ③ 파생, 선물 ④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 운용 ⑤투자자문 ⑥투자일임 ⑦신탁이 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령 제42조(상호의 제한) ①~⑦(생략) - 동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①financial investment ②securities ③derivatives 또는 futures④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 ⑤investment advisory ⑥ discretionary investment ⑦trust 이와 같 은 외국어 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 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 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 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 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산유동화 에 관한법률	제21조(유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 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 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자의 상호사용

가. 대부업등(대부업, 대부중개업)과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생업체가 대부업을 신청한 경우 : 신규 대부업 + 신규 타영업

- 대부업이 본업인지 여부(50% 이상)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상호에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추후 대부업이 본업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대부업 영업수익이 전체의 50% 미만)를 제출하여 변경등록함으로써 상호에 ‘대부’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른 영업을 하던 업체가 대부업을 신청한 경우 : 신규 대부업 + 기존 타영업

-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 업종을 영위하여 영업수익이 발생함을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호에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대부업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50% 이상 될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한다.

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이 법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대부업등에 관련된 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한다.

☞ 主業이 무역회사인 ‘한국상사’가 대부광고를 할 경우 상호를 ‘한국상사대부’로 표시하여 광고한다.

❖ 명의대여 등의 금지

가.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 및 등록증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① 대여자 : 명의 및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② 차용자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대부업 등록의무 위반

나.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은 대부업 영위시의 ‘계산의 주체’ 및 ‘계약의 실질 당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대부계약서상 채권자는 등록업자 甲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권자는 미등록업자 乙이고 甲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10. 대부계약의 체결

【法律】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行令】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대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교부·설명 의무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또는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권고)

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한 후 대부계약서를 교부한다.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한다. 보증계약 체결시에는 보증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계약서 사본 1부와 보증계약서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한다.

① 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한다.

*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사항

- 대부계약 :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 보증계약 :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② 대부계약서 하단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란을 만들어 고객자필로 확인한다.(권고)

주요 확인사항	확 인
1. 대부계약서(또는 보증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예
2. 대부계약서(또는 보증계약서)의 내용과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
3. 불법중개수수료 수취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

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관해야 할 대부계약 관계서류>

1.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2. 대부계약대장 : 대부계약 체결내역이 기재된 장부
3.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 개별 채무자와의 모든 금전 수수내역을 일자별로 구분기재
 - 대부계약대장 및 채무자와의 금전수수내역을 전산 관리하는 경우 전산파일을 보관
4.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 계약서 보관 및 열람·발급 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보증계약서(해당되는 경우)와 그 계약관계서류(대부 계약 대장, 원리금 및 부대비용 내역, 담보관련서류 등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대부업법(§6⑤)은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와 그 계약관계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상 보관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지도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11.9.28 행정처분 사례 참조)

☞ 질의회신 事例 : 계약관계서류를 사본 또는 스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만,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대부업자가 이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반환요구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당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사본 또는 스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10.6.9)

❖ 관련서류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가.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열람문서는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날짜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 수수내역,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이고 발급문서는 채무(보증채무) 증명서 등이다.

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다.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한다.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은 대부업자와 대부이용자(또는 보증인)과 합의로 정함이 원칙이나 과도한 발급비용 또는 발급기한 설정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아니된다.

☞ 대부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을 실비(발급비용, 우편송달료 등 통상 1만원 이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한을 5 영업일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제6조의 증명서 발급의무에 배치될 수 있다.

[참고] 한도대출의 계약서 재교부 관련 ('10.6.3 질의회신 사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에 미리 대출 최고한도를 정하여 놓고 동 한도내에서 차주가 인출 또는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각 인출 또는 대출 건에 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작성(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포함)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한다.
- 대부한도 내의 각 대출(인출) 건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① 당초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대환대출 포함)
: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거나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 ②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는 경우
: 동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인출) 건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 ③ 대부계약상 대출기한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 채무자와 대부업자 간 합의로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전의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경우
: 계약서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함
 - ④ 대출금 인출시마다 인출 건별로 상환 만기일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예: 대출금 인출시점으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
: 각 인출 건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 ⑤ 최초 대출금액에 대하여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하되, 추가 인출시마다 당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추가 인출시마다 신규약정 또는 변경약정 필요
 - ⑥ 상기 열거된 사례와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11. 중요사항 자필기재

【法律】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施行令】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가. 현행법상 음성녹음은 자필기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12. 과잉대부의 금지

【法律】

-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行令】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 증명서류
-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
-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과잉대부 금지원칙

가. 차주의 소득·재산·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과잉대부로서 금지된다. 변제 능력에는 이자상환 능력은 물론 원금상환 능력도 포함한다.

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다만, 대부계약 체결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를 해야 한다. ('11.12.1 시행)

라. 이 경우 대부계약의 체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①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이 있다면 동 금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한 기준으로, ② 한도거래시에는 한도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질의회신 事例 : 한도거래시 실제 대부금액이 300만원 이하일지라도 대부한도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 설정시 대부업체는 차주로부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0.8.5)

마.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아닌 한 추가로 증명서류를 징구할 필요는 없다.

☞ 대부업법상 증빙서류 징구 기준금액이 변경된 경우(예: 500만원 → 300만원), 소득증빙 자료제출의무는 기존 대출자가 이미 대출받은 금액 이내에서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대출과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대부업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소득, 부채, 재산의 증빙서류

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부채관련 증빙서류를,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부채 및 재산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확인한다.

나.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금액(연금, 카드매출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사본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부채, 재산관련 서류는 시행령 제4조의3에 열거된 증빙서류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발급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소득·부채·재산 관련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 본인의 명의로 하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로 의제할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배우자의 동의여부를 배우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상환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권고)

13. 담보제공 확인의무

【法律】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이자율의 제한

【法律】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施行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施行令 附則】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최고이자율 제한

가. '14.4.2일 이후에 대부업자가 체결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34.9%로 제한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 '14.4.1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경우 최고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체결 시점	'10.7.20일 이전	'10.7.21~'11.6.26	'11.6.27~'14.4.1	'14.4.2일 이후
금리 상한	연 49%	연 44%	연 39%	연 34.9%

다. 이자율제한 위반 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라. 연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34.9%를 동 이자납입주기에 따라 (일/월/분기 등)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일 0.0956%, 월 2.908%, 분기 8.725% 등)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이다. (법제처 법령해석, '06.3.24)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법15조),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법11조)

❖ 이자율 계산방식

가. 약정이자, 간주이자,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모든 이자를 계산한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다만, 담보권설정비용(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및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받지 않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며,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계산한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마.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간주이자로 계산한다. 다만 수수료(취급 수수료 등)를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에는 선이자(선취수수료)로서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한다.

사. 대출기간 계산시 원칙적으로 대출실행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대출기간에 포함시키는 한편넣기 방식을 사용한다. 단, 이것은 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대출당일 상환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 상세 계산 : 별첨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법 §8) 적용 대상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란 동법의 중소기업 중 ①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②기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8조)

다. 법 또는 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적용례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 (예시) '14.1.1일 개정된 대부업법 부칙 제7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만기도래시 최고이자율 적용('10.7.22, 질의회신 사례)

- 가.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 인하 전(前)에 체결한 한도거래계약에 대하여 ‘대출연장’ 또는 ‘고객의 인출요청시 심사후 지급’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한도거래계약 이후의 구체적인 대출금 인출신청 및 지급행위가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 상한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나. 당초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대환대출 포함),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 다.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쳐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여부의 결정 및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인출 요청건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연 34.9% 최고이자율 상한을 적용한다. 단, 심사절차가 기 체결된 한도거래계약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대부계약상 대출기한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 채무자와 대부업자 간 합의로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전의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인하된 최고이자율 상한을 적용한다.

[참고]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 ① '02.10.28 대부업법 시행 ⇒ 최고이자율 제한 연 66%로 설정
- ② '07.10.04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49%로 인하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③ '08.03.22 대부업법 개정 ⇒ 모든 대부계약 이자를 연 49%로 제한
- ④ '10.07.21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44%로 인하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⑤ '11.06.27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39%로 인하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⑥ '14.4.1 시행령 개정 ⇒ 최고 이자율 제한 연 34.9%로 인하
○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2.10.26.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2.10.27. ~ '07.10. 3.	연 66%
'07.10. 4. ~ '08. 3.21.	연 49%
'08. 3.22. ~ '10. 7.20.	연 49%(이전 계약건 포함)
'10. 7.21. ~ '11. 6.26.	연 44%
'11. 6.27. ~ '14. 4. 1.	연 39%
'14. 4. 2. ~	연 34.9%

15.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法律】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 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施行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 제>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별표 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 나.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 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 라.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광고시 필수 표시사항

- 가. 명칭(‘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가 포함된 상호) 또는 대표자의 성명
- 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다.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 라.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마. 영업소의 주소
- 바.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사.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 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 (대부업 담당자 전화번호)
- 자.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방송광고 및 150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지면광고에 대하여 적용)
- 차.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대부중개업자에 한함)

*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 본점의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명칭, 전화번호를 말한다. (상기 <나,마,바,사,아> 항목)

【참고】 표시.광고의 정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광고시, 광고 문안과 표기 방법

가. 대부업자등은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나. 대부업자등이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광고할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을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다. 광고매체와 상관없이 모든 대부광고의 좌상단에는 대부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상표(예: □□□론)의 글자크기는 상호(예: △△△대부) 등의 글자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라. 차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게재는 방송광고 및 150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지면 광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목적이 아니고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괄정비된 간판에 해당 영업소의 전화번호가 최소한으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16.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法律】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광고를 할 수 없다.

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대부중개 광고를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가 가능하다.

①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칠 것

② 여신금융기관의 상호를 특정하고 대출모집인임을 명시할 것

다. 불법 사채업자 등이 대부업 등록증을 위변조하여 불법광고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제기되는 만큼, 시·도지사는 광고업자로 하여금 대부광고 게재 이전에 광고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3.14, 협조공문)

① 광고업자는 대부광고 게재를 요청한 대부업자에게 등록증 사본제출을 요청

② 광고업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또는 해당 시도에 연락을 취하여 등록증 진위여부를 검증

③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된 것인지 확인

④ 불법 사채업자 등의 광고에 대해 광고게재를 거부하고 관할 경찰서 또는 금감원에 신고

17.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法律】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가.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령 제3조의2제2항)

- 나. 대부업자등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내용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타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 다. '12.3.1일부터는 대부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허위·과장광고 유형에 포함된다.
- 라. 시·도지사는 대부광고 위반으로 대부업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대부광고 권고사항>

- ① “신용무관”, “누구나 대출”, “100% 대출” 등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음
- ② 상호 및 상표 글자의 도안, 마크, 디자인 등을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지 않음
- ③ “금융회사 협력업체”, “△△△ 허가업체” 등의 문구 등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지 않음

18.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法律】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부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2조)

나.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채권 양수도 계약시, 반드시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예: 상사매출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고용제한

【法律】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法律】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제6조의4(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을 적은 문서를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1.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法律】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가.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와 연락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2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法律】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미등록 대부업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도 역시 금지되므로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 25%('14.7.15.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분부터 적용)로 제한된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또한,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초과지급된 이자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계 약 시 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비 고
'02.10.27~'07. 6.29	X	연 66%	-
'07. 6.30~'07.10. 3	연 30%	연 66%	민사상 효력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에 따른다.
'07.10. 4~'08. 3.21	연 30%	연 49% (신규 또는 갱신계약부터)	
'08. 3.22~'09. 1.20	연 30%	연 49% (기존계약 포함)	
'09. 1.21~'14. 7.14	X	연 30% (기존계약 포함)	이자제한법 적용범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가 배제됨
'14. 7.15~현 재	X	연 25% (신규 또는 갱신계약부터)	

23. 중개의 제한 등

【法律】

-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施行令】

- 제6조의4(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대부중개수수료 개황

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이용자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중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대부업자에게 중개할 경우 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착수금, 가입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13년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1. 개요

가. 적용대상 대부의 범위 및 대부금액별 상한 수수료율

-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2)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나. 적용대상 대부중개업자등

- 1) 수수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부중개업자등”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대출모집인을 모두 포함한다.

* 대출모집인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자(대출상담사)와 그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자가 법인(대출모집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모두 포함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 이러한 모집행위에 대한 급부는 ‘수수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으로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 ‘고용계약’은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을 판단하여 실제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실질은 ‘대부중개(대출모집)’ 계약이나, 중개수수료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배제

2. 대부중개수수료의 범위

가. 대부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1) 원칙적으로 대부 1건의 대부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 대부중개인이 동일 대부업자와 대출이용자 간에 단기간(예 : 1개월) 내 수 건의 대출을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1건의 대출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동일한 1건 대부금액을 편법적으로 수 건으로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보다 완화된 적용되도록 할 수 있음

• 예 : 700만원 대출시 → (상한) 25만원 + 200만원 × 4% = **33만원**
350만원 + 350만원으로 나누어 대출시 →
(상한) 350만원 × 5% + 350만원 × 5% = **35만원**

- 단, 동일 대부업자와 대출이용자 간에 대해 단기간내 여러 건의 대출을 중개한 경우라도, 담보물이 다르거나 대출취급 목적이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대부를 중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여러 대부 건을 합산하여 1건의 대부로 판단하는 경우(예)

• 대부중개업자 A가 대부업자 甲과 대출이용자 乙의 대부를 중개할 때,
6.15일 350만원, 6.20일 350만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각 중개 건에 대해 대부중개수수료를 각각 17만원씩 총 34만원을 수취한 경우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목적으로 700만원의 대출을 350만원씩 분할하여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판단, 두 건 대출을 합산한 700만원을 기준으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산정할 수 있음(상한금액 : 33만원)

* 다만, 각각 다른 두 대의 차량 구입 목적의 할부계약인 경우이거나, 1건은 신용대출, 1건은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등 담보물건이 달라 개별적인 대부중개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음

3) 재대출·증액대출·대출연장에 대해서 대출이용자가 별도의 중개행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편익의 제공은 “기존의 대부 건”을 중개한데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으로 보아, “기존의 대부 건”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에 합산하여 중개 수수료를 산정한다.

- 다만, 재대출·증액대출·대출연장에 대해 대출이용자의 명시적인 중개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대부중개에 준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재대출·증액대출·대출연장시 중개수수료 지급(예)

- 대부중개업자 A가 6.15일 대부업자 甲과 대출이용자 乙간의 500만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20만원을 수취한 이후, 乙의 중개신청 없이 甲과 乙 사이에 9.15일 200만원의 증액대출이 있고, 대부중개업자 A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 대부중개업자 A가 중개한 금액은 6.15일에 대출한 500만원에 한정 →
대부중개수수료율 : $(20\text{만원} + 10\text{만원}) / 500\text{만원} = 6\%$
- 乙의 명시적인 대부중개 신청이 있었고, 중개행위를 통해 200만원의 증액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 9.15일 증액대출은 대부중개에 따른 신규대출 건으로 취급 →
6.15일 500만원 대출 건 : $20\text{만원} / 500\text{만원} = 4\%$
9.15일 200만원 대출 건 : $10\text{만원} / 200\text{만원} = 5\%$

4) 한도약정식 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약정한 한도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미리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이 수시로 인출·상환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대부중개 수수료를 산정한다.
- 미리 약정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추가대출 신청에 대하여 대부업자가 대출여부 심사 및 결정 또는 대출한도·금액·금리·기간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금액이 아닌 최초 대부금액을 기준으로 대부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한다.

◆ 형식적인 한도약정식 대출인 경우(예)

형식적으로 한도약정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대부시마다 별도로 심사를 통해 500만원을 대부한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산정은 약정된 한도 1천만원(중개수수료 상한 45만원)이 아니라 실제 대부가 이루어진 500만원(중개수수료 상한 25만원)을 기준으로 함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나.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범위

- 1) 대부중개수수료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
 - 관련성 :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하나,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사례금, 착수금 등)는 관련성이 인정된다.
 - 대가성 :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출이용자에게 편익이 단순히 이전되거나, 대출이용자 보호 또는 전속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 단순히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는 편익의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및 사례	비 고
1. 대부중개업자등의 중개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	
① 대부중개업자등이 중개한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대부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등으로 지급되는 편익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됨
② 일정 기간내 대부중개실적 등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편익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일정기간 내의 대부중개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2. 대부중개와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편익	
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를 대행하여 스스로 중개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편익 (심사대행수수료) * 대출심사업무는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할 수 없는 업무(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금융위 고시))이나, 대부업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개별 대부중개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3. 대부중개업자등의 영업 과정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	
①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에 대한 광고,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문구류, 달력, 전단지, 기념품 등)을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보전하여 주는 급부 등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대부중개 광고.판촉을 위한 것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② 대부중개업자등이 이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사무비품 유지비용 등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대부중개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편익으로서 대가성도 인정됨
4.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프로모션 비용)	
① 대부중개업자등과 계약시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편익(착수금)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② 대부중개실적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편익(명절비, 찬조금, 식사비 등)	• 개별 대부중개건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됨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도 인정됨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3)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의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및 사례	비 고
1. 대부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실비 범위에서 보전받는 편익 * 다만, 서비스 내용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편익(프로모션)”에 준하여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음	
① 고객 설문조사, 컨설팅 등 대부중개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편익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이 없음 • 서비스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편익으로 대가성은 인정됨
② 대부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령을 대행하고 실비 범위에서 지급받는 편익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고 실비 범위에서 보전받는 것으로 대가성이 없음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스스로의 광고 등을 위한 물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업무상 편의, 대출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실비 등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편익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광고 또는 상품 안내 등을 위해 제작된 물품*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해당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로고가 부착된 문구류, 달력, 전단지, 기념품 등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대출이용자 등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될 목적으로 지급되는 편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전속되어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대출모집인(In-house)에게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전속된 대출모집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무공간을 할애하는 것에 부수되는 편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전속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되어 있는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상품 설명 또는 관련법령 준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 잘못된 대출설명에 따른 대출이용자 피해 방지, 대출모집시 법령 준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부수되는 편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대출 신청을 위해 지급하는 서류 (약정서, 신청서, 상품안내장 등)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품·서류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전속 되어 있는 대출모집인임을 표시하기 위한 명함 및 비즈링 서비스* 비용 * 휴대폰 연결시 해당금융기관 소속임을 알리는 연결음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대출이용자가 특정 여신금융기관 전속 대출모집인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부수되는 편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⑥ 대출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예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서비스 등)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됨 • 대출이용자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수되는 편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일상적인 경비의 범위에서 대부중개업무와 관계없이 유대강화 등의 목적으로 식대 등을 지불하는 것 * 단, 식사비 등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거나 특정 대출 건과 관련되어 중개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편익(프로모션)”에 준하여 대부중개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음	• 대부중개업무와 관련성이 없음 • 대부중개업자등이 스스로 수취하는 편익으로 대가성은 인정됨

- 4)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에 납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3. 대부중개수수료 계산 방식

- 1) 개별 대부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지급되는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대부 금액을 분모로, 대부중개수수료 금액을 분자로 하여 대부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한다.
 -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대부 건의 유지를 조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수수료를 합산하여 대부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한다.

◆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계산(예)

- 대부중개업자 A가 1천만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해당 대부건에 대하여 20만원의 정액 수수료와 10만원의 심사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text{대부중개수수료율} = (20\text{만원} + 10\text{만원}) / 1\text{천만원} = 3\%$$

- 대부중개업자 A가 1천만원(1년 만기)의 대부를 중개하고, 대부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3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던 중 6개월만에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이상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text{지급된 중개수수료 합산} = \text{월 } 3\text{만원} \times 6\text{개월} = 18\text{만원}$$

$$\text{대부중개수수료율} = 18\text{만원} / 1\text{천만원} = 1.8\%$$

- 2) 개별 대부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지 않은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대부중개수수료 제공과 관련된 대부 건에 대해 대부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한다.
 - 일정한 주기별로 지급되거나, 관련된 기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 중에 발생한 대부 건에 대해 대부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율을 계산한다.

◆ 일정 주기별로 지급되거나 관련된 기간이 명백한 경우 중개수수료율 계산(예)

- 1개월간의 대부중개 실적에 연동하여 30만원의 사례금을 수취하였고, 해당 월에 각각 500만원, 1천만원, 1천500만원의 대부를 중개한 경우

$$\text{사례금 } 30\text{만원을 대부금액 비율}(1 : 2 : 3)\text{로 안분} \rightarrow 5\text{만원} : 10\text{만원} : 15\text{만원}$$

$$500\text{만원 건} : 5\text{만원} / 500\text{만원} = 1\%$$

$$1\text{천만원 건} : 10\text{만원} / 1\text{천만원} = 1\%$$

$$1\text{천}500\text{만원 건} : 15\text{만원} / 1\text{천}500\text{만원} = 1\%$$

- 매월 대부중개업자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30만원이 지급되었고, 해당 월에 각각 500만원, 1천만원의 대부를 중개하였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5만원, 1천만원에 대해서는 7만원의 정액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경우

$$\text{임대료 } 30\text{만원을 대부금액 비율}(1 : 2)\text{로 안분} \rightarrow 10\text{만원} : 20\text{만원}$$

$$500\text{만원 건} : (10\text{만원} + 5\text{만원}) / 500\text{만원} = 3\%$$

$$1\text{천만원 건} : (20\text{만원} + 7\text{만원}) / 1\text{천만원} = 2.7\%$$

-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편익(예 : 착수금 등)이나 관련된 기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예 : 광고비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일로부터 1개월(30일)간의 대부중개 건에 대해 대부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계산한다. 다만, 해당 편익이 관련된 대부중개 건이 이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관련된 대부중개 건을 달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일회적으로 지급되거나 관련된 기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6.10일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이 지급되었고, 7.10일까지 각각 600만원, 1천200만원의 대부중개가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 30만원을 대부금액 비율(1 : 2)로 안분 → 10만원 : 20만원

600만원 건 : 10만원 / 600만원 = 1.7%

1천200만원 건 : 20만원 / 1천200만원 = 1.7%

- 5.1일 "7월 말일까지 대부중개를 강화해 줄 것"을 조건으로 광고비 및 프로모션 명목으로 30만원이 지급되었고, 7.30일까지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대부중개가 이루어졌으며, 각각 5만원의 정액 수수료가 지급된 경우

프로모션비 30만원을 대부금액 비율(1 : 2)로 안분 → 10만원 : 20만원

1천만원 건 : (10만원 + 5만원) / 1천만원 = 1.5%

2천만원 건 : (20만원 + 5만원) / 2천만원 = 1.25%

- 3) 대부중개상한제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6.12일) 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부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4.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法律】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는 제외)

25. 검 사

【法律】

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업자등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그 대부업자등의 영업소가 있으면 그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施行令】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5.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7조의4(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 감독/검사/조치 주체

가.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해당 대부업자가 영업소를 등록한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나.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보고 명령 : 시·도지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도청 또는 대부업자의 본점 또는 영업소에서 보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명령 : 영업현황 등 데이터, 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 대부광고 내용 등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명령 : 보고·자료제출명령 이외에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관할 밖에 있는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검사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검사 요청을 통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①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를 검사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 등)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마.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와 지자체의 요청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도지사의 감독 및 검사 기능을 보완한다.

바. 미등록 대부업자는 그 자체로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수사기관에서 단속하고 지자체,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이에 협조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금감원 요청검사

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대부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 ① 시·도지사가 2 이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매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상 대부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④ 동일인이 2이상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⑤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 및 보증인 등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나. 금감원은 시·도지사의 요청검사 후 동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금감원이 통보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검사의 사후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통보한다.(권고)

❖ 금감원 직권검사

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대부업자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며, 금감원은 직권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 시·도에 등록한 경우
- ②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③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 ④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⑤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나. 금감원은 시·도지사의 요청검사 후 동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다. 시·도지사는 금감원이 통보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검사의 사후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통보한다.(권고)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시·도지사는 보고·제출된 자료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업체의 영업소를 감독하는 타 시·도지사에게 명령의 내용을 통보한다. 명령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영업소 감독업무 또는 행정조치(영업정지, 등록취소)에 활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시·도행정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에 조치사유, 조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시·도지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사실을 5년간 공개하여야 한다.(法16의2 참조)

❖ 업무보고서 제출

가. 업무보고서 제출은 반기별 시행되는 대부업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나. 업무보고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11.30. 이전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한다.

2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法律】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 제재절차는 **대부업법** 및 **행정절차법**(제17조, 제39조의2 등)을 준수한다.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 처분(이유제시, 문서주의, 불복절차의 고지)

❖ 영업정지

가. 시·도지사는 일정한 경우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위반행위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재량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 질의회신 事例 :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대부업체가 광고위반시 영업소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영업전체를 지휘·명령하는 주된 영업소가 있고, 주된 영업소에서 광고문안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07.9.4)

① 영업정지 사유(대부업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대부업법 위반 :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명의·등록증 대여 등
- 공정채권추심법 위반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위반 등
- 대부업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검사결과에 따라 내린 시정 명령 위반(法§12 ①, ⑤, ⑦ 등)
-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내에 있는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②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重科)되는 영업정지 기간에 경과(輕科)되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을 가중한다.
-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의회신 事例 :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1]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처분되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영업정지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다. (‘11.3.7)

나.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재량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질의회신 ‘11.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사사례(‘11.8.19,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12①) 위반 후 위반사항이 시정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 : 영업정지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더라도 행정청의 행정지도로 이미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위반행위의 내용,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5. 9. 15. 2005두3257 판결 참조]

❖ 영업정지 범위

가. 영업 전부정지

- ① 대부업자는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대출행위, 고객모집 행위 등 대부관련 영업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할 것이다. 다만, 영업행위로 볼 수 없는 회사 내부의 일반관리업무는 영업정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전에 체결한 계약(중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원리금의 수취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영업정지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만료일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도래되었을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체결하는 기한연장 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한연장 금액이 당초 상호예정금액 이내로서 이자율이 종전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조건이라면 당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처리가 가능하다. (질의회신 ‘11.1.18)

나. 영업 일부정지

-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법령위반사유, 위반횟수, 영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 취급금지, 신규채권 매입금지, 대부중개행위 금지, 지면광고 금지, TV광고 금지 등 영업의 일부를 특정하여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하는 경우

- 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하는 자가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대부중개업에 대한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 ②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법원에 의한 벌금형 등 실형을 선고받아 대부업법 제4조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모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등록취소

가. 시·도지사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해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취소 사유, 예 :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위조된 서류의 제출 등)

나.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비교형량 등을 통해 재량의 범위에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① 대부업자등이 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대부업법 제4조(등록의 제한)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부업법」, 「형법」(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제366조 중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신규대출이 없더라도 기존 대출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가 계속 상환되거나, 합법적인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일정횟수 이상 받은 경우(시행령 별표 1 참조)

⑤ 대부업자등의 소재불명으로 시·도지사가 소재확인 공고를 하고 30일 내에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공고는 ‘당해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고, 방식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질의회신 事例 : 공고의 방법은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해당 지역의 지방지 포함)에 실어야 한다. 따라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은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10.1.11)

⑥ 대부업자등이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시행령 별표 1 참조)

⑦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다른 시·도에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①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② 소재불명 등의 경우, ③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법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청문

② 법 제2항제2호 :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법 제2항제6호 : 생략가능(대부업자등의 소재불명에 따른 등록취소)

라. 시·도지사는 관할 대부업자등의 위법행위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가 경찰서·금감원 등으로부터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영업정지 사유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사익간 비교형량 등을 통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 事例 : 법원의 판결로 대부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부업법 상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와 과태료의 병과가 가능하다.

❖ 행정처분의 통보

가. 시·도지사는 관할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2 이상의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 같은 업체의 지점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같은 업체의 지점을 관할하는지 여부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 질의회신 事例 :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대부업체가 광고위반시 영업소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영업전체를 지휘·명령하는 주된 영업소가 있고, 주된 영업소에서 광고문안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07.9.4)

27.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종결

【法律】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등의 사유

가. 사망, 해산(당연 소멸) : 개인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 시 사망자(해산된 법인)의 등록은 당연히 소멸되므로 시·도지사는 이를 직권말소 처리한다. 시·도지사의 취소 행위는 이미 소멸된 사실의 확인행위로 신청에 따른 폐업 및 직권취소와는 다르다.

나. 대부업자의 신청에 따른 폐업 :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이다.

다.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취소 :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대부업자의 등록을 직권취소한다.

❖ 등록취소 등의 효과

가. 등록이 취소된 자, 폐업한 자, 사망 등으로 당연소멸된 자(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상속인 포함)가 신규대출 관련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미등록 대부(중개)영업에 해당한다.

나. 단, 기존 대부채권을 종결하는 범위 내(원금 및 이자 회수 행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대부채권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개인 대부업자등이 사망시 대부채권을 포함한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등록 대부업자등의 자격은 상속되지 않는다.

28.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法律】

-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施行令】

-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더라도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합한 이자총액이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체결 시점	'10.7.20 이전	'10.7.21~'11.6.26	'11.6.27~'14.4.1	'14.4.2 이후
금리 상한	연 49%	연 44%	연 39%	연 34.9%

나. 다만, 담보권설정비용(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및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여신금융기관의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① 대출 약정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대비용으로써 조기상환 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이자율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 ②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용시기·대상 : '15.1.1.이후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계약 갱신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부칙 제25588호)

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제한사항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법 제8조)과 동일하므로 법 제8조를 참조한다.

[참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계 약 시 점	최고이자율
'09. 4.22. ~ '10. 7.20.	연 49%(이전계약건 포함)
'10. 7.21. ~ '11. 6.26.	연 44%
'11. 6.27. ~ '14. 4. 1.	연 39%
'14. 4. 2. ~ 현 재	연 34.9%

❖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

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 ① 적용대상 : 은행, 은행지주회사, 수협·신용사업 부문
- ② 내용 :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한 경우
최대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3배로 제한됨

나. 기타 여신금융기관

- ① 적용대상 :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회사 등 기타 여신금융기관
- ② 내용 :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한 경우
최대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연 12% 가산범위로 제한됨

☞ 이자율 계산사례 : 별첨

29. 대부업정책협의회

【法律】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 3.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 시·도협의회는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 시·도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시·도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시·도협의회)

가. 대부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나. 시·도지사는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둔다.

※ 근거법령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21446호)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

가.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나. 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업무

가.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등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다. 대부업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라.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협의회의 구성

가. 의장은 해당 시·도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나.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① 해당 시·도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②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③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 ④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을 말한다)

❖ 시·도협회의의 업무

- 가. 대부업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나.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 다.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협회의의 운영

- 가. 협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나. 협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시·도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마. 시·도협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0. 대부업 실태조사

【法律】

-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施行令】

-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2(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의 관보 등 게재)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대부업 실태조사

가. 대부업 실태조사 연 2회로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대부업자가 영업실태 및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상반기 실태조사(1.1~6.30) : 대부업자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 익월 말일(7.31)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결과는 당해 연도 12.31까지 공개한다.
- ② 하반기 실태조사(7.1~12.31) : 대부업자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기준일 익월 말일(다음 연도 1.31)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결과는 다음 연도 6.30까지 공개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나. 각 시·도별로 제출된 실태조사 보고서는 행자부, 금융위, 금감원에서 취합·분석하여 반기별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기관(행자부·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대부업 실태조사 세부 프로세스

- 대부업체 영업실태 보고서 제출 → 관할 시·도 보고서 접수·점검 → 취합·분석
(1차 행자부 → 2차 금감원 → 3차 금융위) → 인터넷 홈페이지 상 보도자료 게재

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 후 술

31.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法律】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 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가. 시·도지사는 관할 대부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처분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처분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다. 행정처분일 또는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실 등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권고)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내용

가.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예 :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등)

나. 대부업체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상호, 소재지,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다. 대부업체 등록번호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라. 위반행위

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바. 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32. 등록 및 검사수수료

【法律】

-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施行令】

-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行政規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47조의4(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②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검사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 ③ 감독원장은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가.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산정원칙

- ① 대부업자에 대한 매회 검사수수료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0.1% 범위 내에서 다음에서 정한 검사원 1인의 1일 검사수수료에 검사원 수 및 검사일수를 곱한 금액과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로서 검사원이 해당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검사착수 전일 및 검사종료일 익일을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1) 검사기관과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35,000원

2)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 : 90,000원(최종일은 50,000원)

* 단, 인근 시에 위치한 경우로서 검사원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부과

② 검사원 1인당 교통비는 검사기관과 다른 시에 위치한 대부업자에만 적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철도임 : 1등 정액 기준

2) 항공임 : 일반석 기준(서울↔제주 구간만 인정)

3) 철도·항공편 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비기준

나. 검사수수료 부과 및 납부시기

① 검사수수료는 매분기 검사실시분을 일괄하여 납부대상 대부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분기익월 20일까지 부과고지 한다.

②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대부업자의 본점에 일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점만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지점에 직접 부과한다.

33. 분쟁조정

【法律】

제18조(분쟁 조정) ①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

- ①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 ③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⑤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나.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4. 대부업협회

【法律】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각 시·도에 지회(지회)를 둘 수 있다.
-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3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4 (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 (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I. 대부업법 조문별 해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6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施行令】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 대부업 협회의 주요업무

- 가. 대부업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나.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 다.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대부업 등록시, 필수교육 포함)
- 라.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 마. 대부업자등, 미등록대부업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 바.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사.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 아.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5.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施行令】

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도지사(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6.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法律】

제18조의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7. 벌 칙

【法律】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삭제 <2009.2.6>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38. 양벌규정

【法律】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과태료

【法律】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1.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 제>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 제>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施行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만 가능하다.

- 다만, 11.11.30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반업체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위반 행위시 해당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II. 대부업체 검사지침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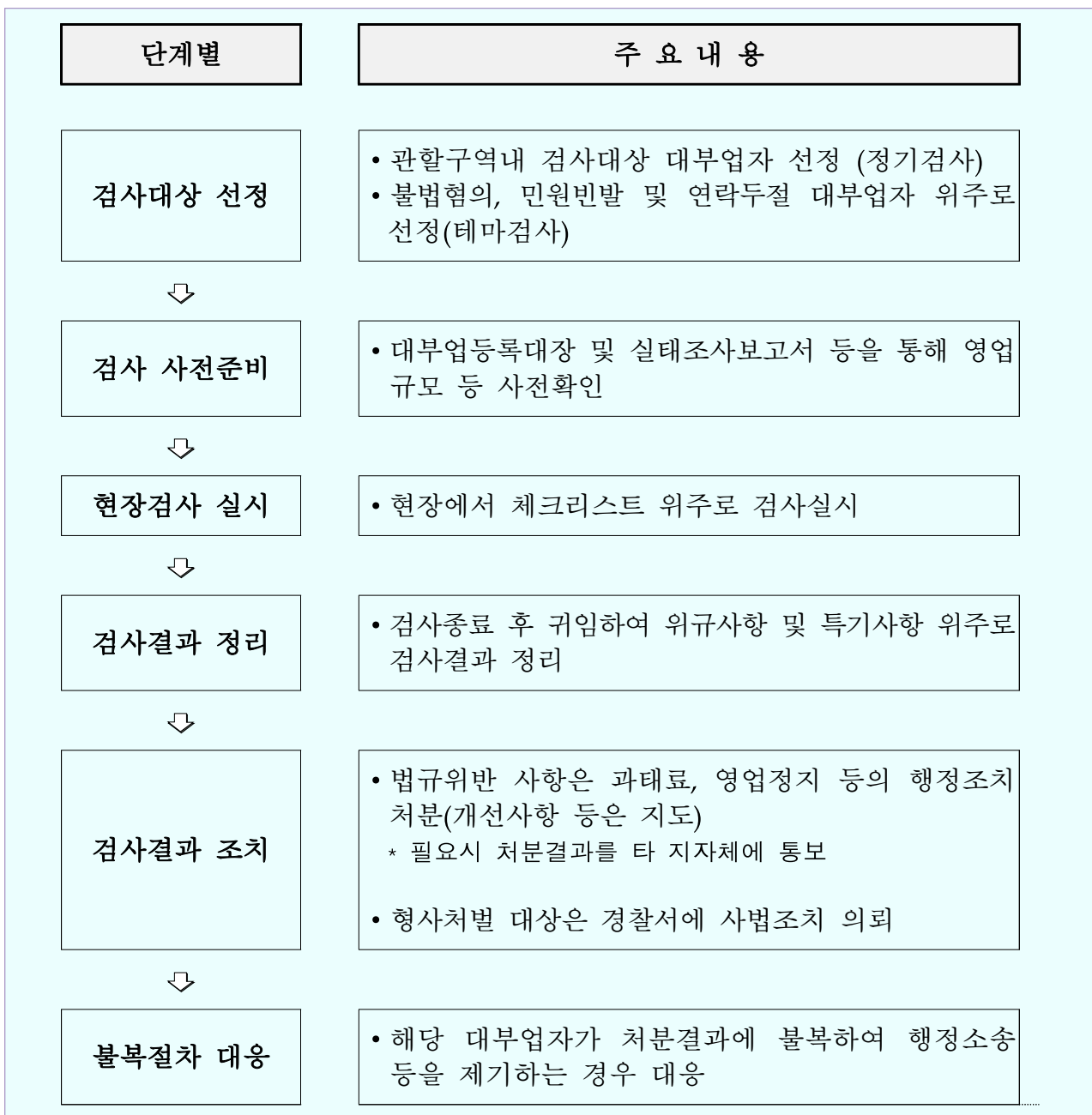
❖ 대부업 검사형태

○ 지자체의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형태는 크게 2가지

⇒ ① 일상적인 정기검사 ② 특정현안에 대한 테마검사

※ 테마검사 예시 : ① 불법협의, 민원빈발 사안, ② 이자율 준수여부, 대부광고 준수여부 등 정책변경 사항 ③ 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자 영업여부 등

❖ 대부업 검사흐름도



II. 대부업체 검사지침 (시·도)

❖ 단계별 절차

① 검사대상 선정

- (정기검사) 관할구역내 대부업자에 대하여 연 1회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초 검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 (연도별 계획)
 - 다만, 관할구역 내 대부업체가 많아 1년내 검사가 어려울 경우 모든 대부업체가 최소 3년에 1회는 현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계획 수립 (3개년 계획)
- (테마검사) 사회적 여론, 정책동향에 따른 관리·감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 목적을 설정하고 연 1회 이상 테마검사를 실시함을 원칙
 - 검사목적과 관련된 민원이 많거나 불법협의가 제보된 업체를 중심으로 표본 (sampling)을 선정하여 집중검사

② 검사 사전준비

- 대부업등록대장 및 최근 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검사대상 대부업자의 기본 사실에 대해 사전 확인 (소재지, 영업형태, 영업규모 등)
- 영업형태,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사인원 및 중점검사항목 등을 확정
 - 검사인원은 최소 2명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할 시·도의 경찰 등에 협조요청
 - 검사일정은 영업형태, 영업규모,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립

③ 현장검사 실시

- 현장검사는 가급적 불시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
- 다만, 주택을 고정사업자로 하는 개인업자의 경우 부재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3~7 일전 사전예고를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도모
 - *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부업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할 경우 불법 협의가 있거나, 관련 서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등과 함께 불시에 집중검사를 실시
- 검사착수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 및 성명을 밝힘

- 현장검사는 **점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대부계약대장과 대부계약 서류철,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비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시·도지사는 점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되, 관리·감독 필요성에 따라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대부거래 규모가 커서 전수검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10~20개 계약서류를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 * 시·도지사는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전수검사 등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경우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당 대부업체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법규 위반사항 등 지적(예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확인서나 증거자료를 징구**하여 위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④ 검사결과 후속조치

- 검사종료후 대부업자별 위규사항, 지도사항 및 특기사항을 위주로 **검사결과를 작성**
-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부과**
 - * 2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같은 업체의 영업소를 감독하는 타 시·도에도 통보
- 행정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의견제출 기회부여) → 처분(이유제시, 문서주의, 불복절차의 고지)의 절차로 진행
- 법규위반 사항은 아니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내지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II. 대부업체 감사지침 (시·도)

[참고] 검사 사전 준비자료

1. 대부업체 등 준비서류

☐ 대부업체

- 대부업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명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임원), 직원 채용서류
- 최근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세무서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서(최근)
- 교육이수증
- 광고 자료철(전단지, 인터넷, 방송 내용 등)
- 민원접수 대장
- 고객별 대부리스트
- 고객별 대부계약서철
- 이자수납 기록장부 및 관련통장
- 연체관리 서류철(독촉장, 최고장, 문자메시지 기록철 등) 및 통화기록 파일
- 채무확인서 발급대장

☐ 대부중개업체

- 대부중개업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명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임원), 직원 채용서류
- 최근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세무서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서(최근)
- 교육이수증
- 광고 자료철(전단지, 인터넷, 방송 내용 등)
- 민원접수 대장
- 거래 대부업체 리스트
- 대부중개 계약서철
- 대부중개 수수료 수입관련 통장
- 중개 명부(대출자 성명, 대부금액 등)

□ 채권추심업체

- 대부업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명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임원), 직원 채용서류
- 최근 업무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세무서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서(최근)
- 교육이수증
- 광고 자료철(전단지, 인터넷, 방송 내용 등)
- 민원접수 대장
- 고객별 추심대상자 리스트
- 고객별 추심철
- 추심관련 수입 통장
- 추심관리 서류철(독촉장, 최고장, 문자메시지 기록철 등) 및 통화기록 파일
- 채무확인서 발급대장
- 신용회복채권, 개인회생채권 등 리스트

2. 지자체 준비서류

- 점검 대상 대부업체의 업무실태조사 보고 내역
- 점검 대상 대부업체의 민원접수 내역
- 현장 점검표
-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요약서)
- 대부업 관련 법령집(또는 매뉴얼)

II. 대부업체 검사지침 (시·도)

점검항목별 체크리스트 (대부업자)

(필수 사항)

점검사항 (필 수)	점 검 방 식	확인
① 대부조건 게시의무	○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여부 ○ 대부업 등록증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는지 여부 ○ 대부업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련자료] 대부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3조의3, 제5조, 제9조	☐ ☐ ☐
② 자료제출의 적정성	○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점검 (반기별 대출금액, 반기별 대출규모 총액 등) [관련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대부계약관계 서류철, 대부계약대장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2조, 제16조	☐
③ 대부계약서 보관 의무	○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여부 [관련자료] 대부계약서, 대부계약대장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6조	☐
④ 대부계약서 표기적정성	○ 대부(또는 보증)계약서상 필수사항 기재여부, 중요사항 자필기재 여부 확인 [관련자료] 대부계약서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6조,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
⑤ 과잉대부 여부	○ 일정금액 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 11.11.30일 이후 체결된 계약 : 300만원 초과시 ○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련자료] 대부계약관계서류철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3	☐ ☐
⑥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 최고이자율 상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계약서상 이자율을 준수 여부 / 이자주기별(월/일) 이자율 상한을 준수 여부 / 갱신계약의 경우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 여부 / 약정이자 이외, 기타 간주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이자율 상한 준수 여부 [관련자료] 대부계약서, 대부 및 회수내역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⑦ 대부중개 거래 현황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관련자료] 대부중개 위임계약서 [관련법규] 현행법상 근거 없음 (도입 예정) ※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한 경우 대부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나, 이와 거래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적발·단속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II. 대부업체 감사지침 (시·도)

⑧ 대부광고 준수여부	○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대부광고 필수 기재 사항 포함 여부 점검 ○ 대부광고의 글자크기 등 문안표기 방식 점검 ○ 대부광고의 내용상 허위·과장 광고문구 포함 여부 점검 [관련자료] 대부조건 게시물, 대부광고문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 ☐ ☐
⑨ 민원 관련	○ 해당업체 민원관련 사항 사실여부 확인 [관련자료] 해당업체 민원사항 (추심 등) [관련법규]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등	☐

(임의 사항)

점검사항 (임 의)	점 검 방 식	확인
① 대부약관의 적정 여부	○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비 부당한 조항 포함 여부 [관련자료] 대부업자가 사용중인 약관 [관련규정] 대부거래표준약관	☐
② 부채증명서 발급 여부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과도하거나 발급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사실상 발급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관련자료] 부채증명서 발급대장, 관련 민원신고 [관련규정] 대부업법 제6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5조, 제13조	☐
③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 여부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지 여부 - 추심전문업자의 경우 등 사항은 필수 검사사항 ○ 추심과정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준수하였는지 - 불법추심 관련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거래상대방 10~20명을 임의 선정하여 직접 연락을 통해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특히, 공정채권추심법 제9조 및 제12조 위반 여부) [관련자료] 대부채권 관련대장, 관련 민원신고 [관련규정] 대부업법 제9조의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 ☐
④ 보증 및 담보대출	○ 제3자 담보대출의 경우, 제3자의 동의여부를 받았는지 여부 ○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 보증계약인 5~10명을 임의 선정하여 직접 연락을 통해 보증계약서와 대 부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관련자료] 대부계약대장, 담보대출 동의서, 보증대출계약서 [관련규정] 대부업법 제6조, 제7조의2	☐ ☐

II. 대부업체 검사지침 (시·도)

점검항목별 체크리스트 (대부중개업자)

(필수 사항)

점검사항 (필 수)	점 검 방 식	확인
① 자료제출의 적정성	○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점검 (거래업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등) [관련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대부계약관계 서류철, 대부계약대장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2조, 제16조	☐
② 미등록 대부업자 거래금지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여부 [관련자료] 대부중개대장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1조의2	☐
③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 거래상대방(채무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 거래상대방 10~20명을 임의 선정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여 수수료 등 중개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관련자료] 대부중개대장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1조의2	☐
④ 대부광고 준수여부	○ 상호에 '대부중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대부광고 필수 기재사항 포함여부 점검 ○ 대부광고의 글자크기 등 문안표기 방식 점검 ○ 대부광고의 내용상 허위·과장 광고문구 포함여부 점검 [관련자료] 대부조건 게시물, 대부광고문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 ☐ ☐
⑤ 민원 관련	○ 해당업체 민원관련 사항 사실여부 확인 [관련자료] 해당업체 민원사항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 [관련법규]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등	☐

(임의 사항)

점검사항 (임 의)	점 검 방 식	확인
① 다단계 대부중개 여부	○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이루어지는 여부 [관련자료] 대부중개 위임계약서 [관련법규] 현행법상 근거 없음 ※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다단계 위탁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거래 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적발·단속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참고] 대부업체 관련 주요 지도사항(금감원 등)

- ① 약속어음 공증비용 관련 대부업자 지도요청('08.8.28.)
 - 약속어음 공증비용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동 공증비용으로 인해 법령상 허용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②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수취를 위한 기간산정 관련 지도요청('08.11.3.)
 - 대출금 이자계산기간 산정방식을 한편넣기로 변경하도록 지도
- ③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방법 개선에 관한 협조요청('08.12.15.)
 - 대부업체가 신용조회시 대출상담 조회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실행 조회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신용하락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 ④ 대부업자의 불법 신용카드할인(깡) 실태자료 송부 및 지도 요청('08.12.22.)
 - 대부업자의 불법 신용카드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⑤ 규제 일몰시간 중 고금리 수취사례 송부 및 지도요청('08.12.22.)
 - 대부업체가 이자율규제 실효기간중 고금리를 수취하지 않도록 지도
- ⑥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사실 통보 및 지도 요청('09.3.3.)
 - 상호를 다르게 게재하거나 주소를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⑦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관련 지도 요청('09.4.15.)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을 알리고 대부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 ⑧ 고객정보 보호관련 유의사항 안내('09.7.3.)
 -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
- ⑨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협조요청('09.7.31.)
 - 전세권 설정비용이 담보설정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이자에 산입 처리하도록 지도
- ⑩ 대부업 등록 및 대부광고시 전화번호 사용상 유의사항 안내 협조('09.9.11.)
 - 대부업 등록시 광고용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동 전화번호만 대부광고시 사용하도록 지도

II. 대부업체 감사지침 (시·도)

- ⑪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09.10.9.)
 -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 ⑫ 개인회생 면책자 정보에 대한 삭제 기준 통보('09.12.23.)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송받은 개인회생 면책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도
- ⑬ 채권추심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유의사항 안내 협조요청('10.2.18.)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관련 문자메시지를 야간에 전송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 ⑭ 대부업체의 휴무일 연체이자 부과 관행 개선관련 안내 협조요청('10.2.26.)
 - 대부업체에서 원리금 납입기한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
- ⑮ 대부업체 상호등록 표기시 유의사항 안내 협조('10.5.7.)
 - 법인 대부업체가 등록갱신 기간 도래로 지점 상호에 “대부” 문자를 추가할 경우 본점 상호에도 “대부”를 추가토록 지도
- ⑯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업자 지도 요청('10.6.14.)
 - 대부업자가 대출실행전 대출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의 문구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토록 지도
- 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효력기간 설정관련 협조('10.6.29.)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상의 동의 효력기간이 대부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종료될 수 있도록 설정·운용토록 지도

*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서 계약 종료시 동의효력이 종결됨을 명시
- ⑱ 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 자필기재 지도 요청('10.7.5.)
 - 대부계약서 작성시 ‘대출한도금액’란도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자필을 받도록 지도
- ⑲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10.10.21.)
 - 채무자의 친·인척 등으로 하여금 서민전용대출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대환대출을 받아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 ⑳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서 관련 지도사항 통보('10.11.12.)
 - 고객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지도

㉓ 대부업체의 채무자의 개인정보 징구 금지 협조요청('10.12.1.)

- 대부업체가 대출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등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8조에서는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㉔ 대부업체의 보장성보험 계약해지를 통한 채권추심 자체 지도 협조 요청('11.1.6.)

- 대부업체가 소액 보장성보험 강제해지를 통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지도

㉕ 대부업체의 채무초과수령액 반환지도 협조요청('11.1.10.)

- 대부업체에 채무초과수령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조속히 반환하고 향후에는 동 채무초과수령액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지도

㉖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및 상호 사용 관련 안내 협조요청('11.3.10.)

-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 교부비용을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도록 지도

㉗ 대부업체의 금융거래정보 보호 관련 지도 협조요청('11.4.14.)

- 대부업체가 해킹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 대책, 웹서버 관리 및 아웃소싱 관리대책 등을 적절히 수립·운용하도록 지도

㉘ 대학생 대출고객에 대한 학자금대출 등 안내 요청('11.8.9)

- 대학생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로 하여금 기존 대학생 대출고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학자금대출 등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지도

㉙ 고객정보보호 관련 협조요청('11.9.22)

-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의 외보유출 방지 등 고객정보 보안관리 소홀에 의한 금융이용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도

㉚ 영업관행 개선 및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통보('11.10.17)

-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된 유형별 주요 지적내용과 기 지도사항을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위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㉛ ‘인감증명 발급사실 진위확인’ 이행 철저 협조 요청 통보('11.12.12)

-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행안부의 협조공문을 회원사에 안내하도록 지도

II. 대부업체 감사지침 (시·도)

㉔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12.3.2)

-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문자 등을 발송하는 일부 대부업체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㉕ 대학생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지도 요청('12.3.29)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금용도, 부채규모, 근무처 등을 DB로 구축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㉖ 대부(중개)거래시 유의사항 통보('12.3.29)

- 대부(중개)업체가 채무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별도 법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체와 별도 법인이 전산시스템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㉗ 대부업체의 채무자의 개인정보 징구 금지 지도 요청('12.5.3)

- 대부업체가 대출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등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8조에서는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㉘ 대부(중개)업체의 대학생 대출 취급 자제 지도 요청('12.6.21)

- 대부업체가 대학생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기준 상환능력 심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도 위 취지를 반영하여 민원 야기 및 불법추심 행위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대출의 중개를 자제하도록 지도

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지도 요청('13.1.16)

- 대부업체가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등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㉚ 보증인 대출 취급 관련 지도 요청(참고인 명칭을 이용한 대출)('13.2.15)

- 대부업체가 대출 취급시 사실상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보증의사 확인 및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가 표시되도록 지도

㉛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한 불법영업 관련 지도 요청('13.4.24)

- 대부(중개)업체에서 국민행복기금 사칭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㉔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회사의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지도 요청('13.5.3)

- 향후 관할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지원협약 대상채무자임을 통지받은 경우 일체의 채권추심을 즉시 중지하여 채무자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㉕ 대부계약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13.7.19)

- 일부 대부업체가 금전대부 취급시 채무자에 대한 편의 제공 또는 고객 확보 경쟁 등을 이유로 대부계약서 작성 전에 금전을 선지급 하는 등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㉖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13.8.22)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 비용 감소요인을 대부금리에 반영하는 등 대부 원가를 감안한 합리적인 금리결정체계가 대부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도

㉗ 개정 대부업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른 업무지도 협조 요청('14.5.16)

- '14년중 개정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대부업체가 개정 대부업 관련 법령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㉘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 관련 유의사항 통보('14.7.9)

- 채무확인서 교부시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발급수수료를 법상 최고금액(건당 1만원)으로 획일 징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㉙ 대부이용자의 채무초과입금액 반환지도 내용 통보('14.7.24)

- 대부이용자의 이자계산 착오 등으로 채무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원(채무초과입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 등에 대한 업무지도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I. 실태조사 대상 및 작성 기준

- ☐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년 6월말 또는 12월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 대부업·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되었으나 기준일 이후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업체도 기준일 현재 분석 대상에 포함 (자료 미제출시 미제출업체 명단에 포함시켜 제출)

- ☐ 일반현황, 대부잔액, 자산, 부채 등 모든 항목 작성기준일은 '○○년 6월말 또는 12월말 기준 (세부기준은 “작성서식”상의 주석 설명내용 참고)

II. 실태조사 진행 절차

①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보고서 송부

②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응답 실시

③ 실태조사 자료 취합 및 입력서식 작성

④ 실태조사 자료 제출

- 시·군·구 담당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취합한 작성서식*(보고서) 및 입력서식을 해당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엑셀파일),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서면서식), 지점용(서면서식), 개인용(서면서식)

- 시·도 담당자는 기초단체로부터 동 자료를 최종 취합하여 실태조사 총괄표(엑셀파일), 입력서식(엑셀파일),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작성서식(엑셀파일) 내용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행자부에 제출

⑤ 실태조사 자료 분석

- 행자부는 시·도지사가 송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금융위 및 금감원에 송부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분석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논의 및 발표

-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 후(대부업정책협의회), 행자부, 금융위, 금감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조사결과 발표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Ⅲ.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제출업체와 미제출업체를 별도 작성

- 제출업체와 미제출업체를 별도로 작성(입력서식 참고)하고, 미제출업체의 경우 반드시 미제출 사유 작성 (예 : 폐업, 등록취소, 소재지 불명 등)
- 제출 및 미제출업체의 합은 실태조사 총괄표 상의 '○○. △△월말 등록업체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

② 채권추심 전문업체의 기재내용 확인

- '10년 하반기 실태조사부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대한 별도 입력내용이 추가되어 이들 업체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이들 업체가 기재하는 “매입채권 현황”의 채권 액면가격, 채권 매입가격, 채권 매입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부적정 사례 : 부실채권 액면가격 < 채권 매입가격 으로 기재 등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업체에 대한 구분 작성 불필요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하는 경우라도 이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않고 업체당 입력서식에 1회만 기재

※[참고]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사례

1. 부적정 사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는 업체를 영업형태별로 구분 입력

대부업체명	대부실적	대부중개실적	차입실적
A대부	1,000,000	-	1,000,000
A대부	-	1,000,000	1,000,000

2. 적정 사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구분 없이 입력

대부업체명	대부실적	대부중개실적	차입실적
A대부	1,000,000	1,000,000	1,000,000

④ 실태조사 총괄표 내용의 적정성 확인

- 자산규모별 및 영업형태별 등록(제출)업체수 자료 등을 기재하는 실태조사 총괄표 내용의 적정 기재 여부* 확인

* 자산규모별 등록업체수 합계 및 영업형태별 등록업체수 합계는 반드시 일치

⑤ 허위·착오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거래자수에 비하여 대부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거나 개인 및 소규모법인의 대출금리가 20% 이내*인 경우 등 허위·착오 기재 가능성이 높은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 (대출장부 확인 등)

* 자금조달원가 및 연체율 등을 감안할 경우 적용 불가능한 금리

※[참고] 허위·착오기재 사례

1. 거래자수에 비하여 대부금액이 적은 경우 금액 단위(원, 천원 등)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 확인 필요
2.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예 5%) 에는 연평균 금리로 기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필요 → 월평균 금리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

⑥ 입력서식 기준, 단위 적정 여부 확인 필요

- 입력서식 (엑셀, 지자체 담당자 입력)의 양식 및 단위(원, %, 명)를 임의 변경하여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참고] 단위 임의변경 사례 예시

구 분	거래자수(명)	대출금(원)	대출금리(%)
A대부업체	1천명	200백만	월 4%
B대부업체	2,000	300,000,000	0.49
C대부업체	3만명	2억	48%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붙임1>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예시)

-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작성자 : 전화번호 : e-mail :

1. 일반현황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등록지역 ¹⁾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²⁾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³⁾		대표자 성명	
등록일자 ⁴⁾		결산월 ⁵⁾	
전화번호		임직원수	
최대주주명 ⁶⁾		최대주주지분율(%)	
등록내용 ⁷⁾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사업내용 ⁸⁾	☐ 대부전문 ☐ 대부중개 ☐ 대부채권매입추심		
	☐ 전업 ☐ 겸업(업종)		
사업장주소		영업유무 ⁹⁾	☐ 1 ☐ 2 ☐ 3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세종으로 구분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각 상호를 모두 기재)
-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작성 (예) 1998-08-26
- 회계연도 결산월 기재 (예) 1.1.~12.31.인 경우 12월, 4.1.~3.31.인 경우 3월
- 최대주주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최대주주명(국적 또는 본점소재국)을 표시하고 최대주주가 내국인이라도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국가를 표시하며 교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 (예) 000(미국), 000(일본), 000(재일동포)
- 등록내용을 기재(대부업 등록인 경우 “대부”, 대부중개업 등록인 경우 “대부중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를 기재)
- 사업내용을 기재(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전문”,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중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기재하며 중복 기재 가능)
 - 대부전문·대부중개·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 “전업” 기재, 대부업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업(업종)” 기재 (예) 겸업(임대업)
- 영업 중은 1번, 신규대부는 중단하고 채권회수만 하는 경우는 2번, 채권이 없고 영업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인 경우 3번에 체크

2. 지점현황

연번	상호	등록번호	임직원수	전화번호	소재지
1					
2					
3					

- 지점현황은 본점에서만 작성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3. 자산·부채현황

(단위 : 원)

① 자산 ¹⁾	② 부채	③ 자본	④ 자본금	⑤ 당기순이익 ²⁾

- 자산 :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은 '00.△△.31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 당기순이익 : 최근 회계연도(연간) 당기순이익 기재
-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4.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가. 대부현황

(단위 : 명, 원, %)

구 분	거래자수	대부잔액 ⁴⁾	연평균 대부금리 ⁵⁾	평균연체율 ⁶⁾
신용대출 ²⁾				
담보대출 ³⁾				
합 계				

1. 대부현황은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취급한 대출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입채권(제3의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취급한 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은 제외
2. 신용대출 :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3. 담보대출 :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4. 대부잔액 : 'OO.△△.31 현재 재무제표상 대부(대출)잔액 기재
5. 연평균 대부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
6. 평균연체율 : ('OO.△△.31 현재 연체채권잔액÷전체대부잔액)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 연체대출금 :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약정만기 도래 전이라도 이자 미납입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 등

나. 매입채권 현황

(단위 : 명, 원, %)

구 분	'OO.△△.31 현재 잔액 기준		최초 매입시 기준		
	거래자수 ⁴⁾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⁴⁾	채권 액면가격 ⁵⁾	채권 매입가격 ⁵⁾	채권 매입률 ⁶⁾
신용대출 ²⁾					
담보대출 ³⁾					
합 계					

1. 매입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취급한 대출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CB·BW 등 금융투자자산, 상사채권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2. 신용대출 : 매입채권이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인 경우
3. 담보대출 : 매입채권이 신용대출이 아닌 모든 경우
4. ① 거래자수,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 'OO.△△.31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거래자수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의 잔액('OO.△△.31 현재 재무제표상 잔액)
5. ② 채권 액면가격, 채권 매입가격 : 'OO.△△.31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최초매입시 액면가격 및 매입가격 기재
6. ② 채권 매입률 : (채권 매입가격/채권 액면가격)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예) 액면가 4억원(거래자 20명) 채권을 1천만원에 매입, 이 중 액면가 1억원(거래자 4명)에 해당하는 채권을 회수 하여 'OO.△△.31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3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5백만원이라고 가정
☞ ① 'OO.△△.31 현재 잔액기준
- 거래자수 : 16명(=20명-4명),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 7.5백만원(=OO.△△.31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
☞ ② 최초 매입시 기준
- 채권 액면가격 : 3억원(=최초 매입시 액면가 4억원-회수채권 액면가 1억원), 채권 매입가격 : 7.5백만원 (=최초 매입가 1천만원-회수분 매입가 2.5백만원), 채권 매입률 2.50%(=7.5백만원 ÷ 3억원×100)
※ 단순 예시이며 회사의 회계처리방식(매입가 또는 OPB 기준)에 무관하게 'OO.△△.31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입채권의 ①'OO.△△.31의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액면가격 기준 잔액이 아님)과 ②최초 매입 당시의 액면가격과 매입가격을 기재

다. 대부중개현황 <대부중개업체만 작성>

(단위 : 개, 건, 원, %)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²⁾	대부중개건수 ³⁾	대부중개금액 ³⁾	중개수수료 수입 ⁴⁾	중개수수료율 ⁵⁾

1. 6개월간 해당 대부업체가 제3의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한 실적을 기재
2.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 해당 기간동안 대부를 중개한 제3의 대부업체 개수 기재
3. 대부중개건수, 대부중개금액 : 제3의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 및 금액을 기재
4. 중개수수료 수입 : 대부 중개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 기재
5. 중개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수입 ÷ 중개금액)×100

라. 차입현황

(단위 : 개, 원, %)

구 분	차입처수	차입금 잔액	연평균 차입금리 ³⁾
금융회사차입금 ¹⁾			
일반차입금 ²⁾			
합 계			

1. 금융회사차입금 : 'OO.△△.31 현재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 보험 등) 차입금 잔액(※대부업체 제외)
2. 일반차입금 : 'OO.△△.31 현재 대부업체, 개인, 일반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금융권 이외 업종)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 잔액
3. 연평균 차입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 (예) 1백만원 차입해서 6개월간 5만원 이자비용지급 → 10.00%

Ⅲ.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나. 매입채권 현황

(단위 : 명, 원, %)

구 분	'00.△△.31 현재 잔액 기준		최초 매입시 기준		
	거래자수 ⁴⁾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⁴⁾	채권 액면가격 ⁵⁾	채권 매입가격 ⁵⁾	채권 매입률 ⁶⁾
신용대출 ²⁾					
담보대출 ³⁾					
합 계					

- 매입채권은 해당 대부업체가 취급한 대출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등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단순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CB·BW 등 금융투자자산, 상사채권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신용대출 : 매입채권이 순수신용(어음할인 포함),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인 경우
- 담보대출 : 매입채권이 신용대출이 아닌 모든 경우
- ① 거래자수,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 '00.△△.31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거래자수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의 잔액(='00.△△.31 현재 재무제표상 잔액)
- ② 채권 액면가격, 채권 매입가격 : '00.△△.31 현재 보유한 매입채권의 최초매입시 액면가격 및 매입가격 기재
- ② 채권 매입률 : (채권 매입가격/채권 액면가격) × 100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예) 액면가 4억원(거래자 20명) 채권을 1천만원에 매입, 이 중 액면가 1억원(거래자 4명)에 해당하는 채권을 회수하여 '00.△△.31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3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5백만원이라고 가정
☞ ① '00.△△.31 현재 잔액기준
- 거래자수 : 16명(=20명-4명),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 : 7.5백만원(='00.△△.31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
☞ ② 최초 매입시 기준
- 채권 액면가격 : 3억원(=최초 매입시 액면가 4억원-회수채권 액면가 1억원), 채권 매입가격 : 7.5백만원(=최초 매입가 1천만원-회수분 매입가 2.5백만원), 채권 매입률 2.50%(=7.5백만원 ÷ 3억원×100)
※ 단순 예시이며 회사의 회계처리방식(매입가 또는 OPB 기준)에 무관하게 '00.△△.31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입채권의 ①'00.△△.31의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액면가격 기준 잔액이 아님)과 ②최초 매입 당시의 액면가격과 매입가격을 기재

다. 대부중개현황 <대부중개업체만 작성>

(단위 : 개, 건, 원, %)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²⁾	대부중개건수 ³⁾	대부중개금액 ³⁾	중개수수료 수입 ⁴⁾	중개수수료율 ⁵⁾

- 6개월 동안 해당 대부업체가 제3의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한 실적을 기재
-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 해당 기간동안 대부를 중개한 제3의 대부업체 개수 기재
- 대부중개건수, 대부중개금액 : 제3의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수 및 금액을 기재
- 중개수수료 수입 : 대부 중개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 기재
- 중개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수입 ÷ 중개금액)×100

라. 차입현황

(단위 : 개, 원, %)

구 분	차입처수	차입금 잔액	연평균 차입금리 ³⁾
금융회사차입금 ¹⁾			
일반차입금 ²⁾			
합 계			

- 금융회사차입금 :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에 한정하며 '00.△△.31 현재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 보험 등) 차입금 잔액(※대부업체 제외)
- 일반차입금 :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에 한정하며 '00.△△.31현재 대부업체, 개인, 일반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 금융권 이외 업종) 등에서 조달한 차입금 잔액
- 연평균 차입금리 : 연간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기재 (예) 1백만원 차입해서 6개월간 5만원 이자비용지급 → 10.00%

[별첨 1]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사례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1 이자율 계산 방법

※ ' 14.4.2일 이후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을 전제로 함(연 34.9%)

❖ 기본적인 이자율 계산 사례

가. '14.4.2. 이후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34.9%로 제한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 '14.4.1.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최고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체결 시점	'10.7.20일 이전	'10.7.21~'11.6.26	'11.6.27~'14.4.1	'14.4.2일 이후
금리 상한	연 49%	연 44%	연 39%	연 34.9%

다. 이자율제한 위반 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라. 연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34.9%를 동 이자납입주기에 따라 (일/월/분기 등)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일 0.0956%, 월 2.908%, 분기 8.725% 등)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이자제한과 계약의 효과

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경우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대부업법상 원본과 법이 인정하는 최고 상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내이며, 동 범위 내에서 원본 및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채무는 소멸된다.

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부분을 변제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채무자의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계산사례 ①】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5월 1일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 후인 5월 11일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총 110만원을 수취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100만원
- 이자 : 10만원
- 10일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10\%$
- 연간 총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365\text{일}/10\text{일}) \times 100 = \text{연 } 365\%$

▶ 10일간 수취이자율은 연 365%로 연간 이자율 상한(연 34.9%)을 초과

【계산사례 ②】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매월 후취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 첫째 달에 1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그 후 매월 2만원씩 이자를 11회 받음. 갑은 1년간 받은 이자가 총 32만원이므로 연 32%로서 연 34.9%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100만원
- 이자 : 1회 10만원, 2~12회 각 2만원, 1년간 32만원 수취(납입주기 : 월)
- 1회차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월 } 10\%$ (연 환산 120%)
- 2회차~12회차 각 이자율 = $2\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월 } 2\%$ (연 환산 24%)
- 연간 총 이자율 = $32\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연 } 32\%$

▶ 총 이자율과 2~12회차 수취 이자율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1회차는 월 10%로 월이자율 상한(약 2.908%)을 초과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계산사례 ③】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하고 1달 후 총 110만원(원금 100만원, 이자 10만원)을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

<이자율 계산>

- 원금 100만원, 이자 10만원
- 1달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10\%$ (연 환산 120%)
- 상환하여야할 채무액 = $100\text{만원(원금)} + 29,083\text{원(이자 : } 100\text{만원} \times 34.9\%/12) = 1,029,083\text{원}$

▶ 이미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110만원을 변제한 경우 **70,917원(상환하여야할 채무액 1,029,083원과의 차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자계산의 시기 및 이자지급일

가. 이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 금전을 빌리는 자가 대부업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나. 이자는 당사자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토·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연체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정상이자(연체이자 아님)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 다만,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산사례 ④】

대부업자 갑은 8월 8일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매달 연 24%(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첫 번째 이자지급일인 9월 9일은 추석연휴기간으로, 같은 기간 중 은행은 영업점을 열지 않으며, 9월 11일 영업점을 개점함

<연휴 : 추석연휴 9월 7일(일)~9월 9일(화), 대체휴무일 9월 10일(수)>

<당초 상환예정일> 9월 9일

▶ 채무자가 공휴일 다음 영업일인 9월 11일에 상환하여도 연체로 보지 않음.

단, 2일간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할 이자는 한달치 이자(2만원)에 2일 이자($1,315\text{원} = 100\text{만원} \times \text{연 } 24\% \times 2/365$)를 합한 21,315원이다

2 선이자 공제

가.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본다.

- 선이자란 선취수수료, 선사례금, 선할인금, 선수수수료, 선공제금, 선채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이자(간주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조회비용은 이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계산사례 ⑤】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하고, 1달 이후 100만원을 수취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이자 : 20만원(1달후 지급한 1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 이자율 = $20\text{만원} / 80\text{만원} \times 100 = 25\%$
- 연간 총 이자율 = $1\text{개월 이자율} \times 12 = \text{연 } 300\%$

▶ 수취 이자율은 월 25%(연 300%)로 이자율 상한(월 2.908%, 연 34.9%)을 초과

❖ 대부업자의 간주이자

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나. 다만,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 중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설정비용은 저당권·가등기담보권·매도담보·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단, 그 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 대부업자가 담보물건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서도 근저당권 등에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의 본래 목적과 정의(용익물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전세권 설정비는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담보설정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03조, 제108조 참조)

* 다만, 대부업자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 전세권이 민법상 전세권 정의에 부합하게 설정된 경우로써 실질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당해 대부와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이자에서 제외하는 신용정보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한다.

* 실제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인지 여부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www.fcsc.kr/D/fu_d_01_05.jsp) 또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통해 확인

③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 비용이므로 그 수수료 등의 적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판단*한다.

* 단, 이 경우에는 대부계약의 내용, 경매비용의 수수시점 및 사후정산 여부 등 각 사안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경매비용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계산사례 ⑥】

대부업자가 1월 2일 12개월 만기,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24%, 연체이자율 30%, 월이자 후취)을 취급하면서 20만원의 취급수수료를 선취하였다. 채무자는 대출시행 후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다가 10월차 납기부터 계속 이자를 연체하다가 약정만기일인 익년 1월 2일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상환(약정원금 1,000만원과 연체이자 등)하여 동 대출건을 정리하였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따라 1개월까지는 연체된 약정이자에 대하여, 1개월 경과 시부터 전체 원금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 대출원본 : 980만원(대출 약정금액 1,000만원 - 취급수수료 20만원)
- 1~9차월의 매월 약정이자 : $1,000\text{만원} \times 24\% \times 1/12 = 20\text{만원}$
- 10차월 발생이자 = 20만원(약정이자) + $20\text{만원} \times 30\% \times 1/12$ (연체이자) = 20.5만원
- 11차월 발생이자(연체이자) = $1,000\text{만원} \times 30\% \times 1/12 = 25\text{만원}$
- 12차월 발생이자 = 25만원(연체이자) + 20만원(상환원금 1,000만원 - 실제 대출원본 980만원) = 45만원
- 총 수취이자 = 180만원(1~9차월) + 20.5만원(10차월) + 25만원(11차월) + 45만원(12차월) = 270.5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차월 ~ 9차월 : $20\text{만원}/980\text{만원} = \text{월 } 2.041\%$ (연 환산 24.49%)
- 10차월 : $20.5\text{만원}/980\text{만원} = \text{월 } 2.092\%$ (연 환산 25.10%)
- 11차월 : $25\text{만원}/980\text{만원} = \text{월 } 2.551\%$ (연 환산 30.61%)
- 12차월 : $45\text{만원}/980\text{만원} = \text{월 } 4.592\%$ (연 환산 55.10%)
- 연간 총 이자율 = $270.5\text{만원}/980\text{만원} \times 100 = \text{연 } 27.60\%$

▶ 1~11회차 수취 이자율은 월이자율 상한(약 2.908%)을 초과하지 않지만, 12회차 월이자율은 4.592%로 월이자율 제한을 초과

나. 대부거래가 아닌 경우 관련 수수료는 이자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지급보증만 존재하는 등 직접적인 자금 교부가 없는 경우 대부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무역금융(신용장발행 등)에서 순수 지급보증(원화, 외화)만 발생하고 대부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약정이율이 연 34.9%인 경우에는 일체의 수수료(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제외) 및 연체 가산이자를 받지 못한다.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 여신금융기관의 간주이자

가. 여신금융기관의 간주이자 인식도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와 동일하다.

- 원칙적으로, 이자율 산정시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나.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래와 같은 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 ①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 약정기간이 1년 이상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환금액의 1% 이내의 금액은 대부업법상 대출 부대비용으로서 간주이자에서 제외
- ②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 발생하는 인지세, ATM기 이용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부채증명서 등)는 실비(實費)의 범위 내에서 간주이자에서 제외
- ③ 여신금융기관이 받지 않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신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간주이자 인식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간주이자로 계산한다.
- ② 다만, 수수료(취급수수료 등)를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에는 선이자로서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 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된다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간주이자로 인식한다.

❖ 여신금융기관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율 계산

가.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실 대출기간 기준 안분방식)

- 중도상환수수료의 대출 사용기간에 따른 이율은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약정이율이 연 34.9%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대출 약정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대비용으로써 조기상환 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이자율 상한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 대출 약정만기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점에 체결한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출의 총 누적사용기간이 아님)

* 대출 약정만기가 1년 이상인지 여부 : ① (최초 약정기간 2년) 인정, ② (최초 약정기간 6개월, 계약 연장 6개월) 불인정 ③ (최초 약정기간 1년, 계약연장 6개월) 최초 약정기간만 인정, ④ (최초 약정기간 6개월, 계약연장 1년) 계약연장기간만 인정

② 대출금 실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약정기간 내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시점의 이자로 간주한다.

다.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금 실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도상환수수료의 금리환산방식 변경의 적용시기·대상 : '15.1.1.이후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계약 갱신분부터 적용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계산사례 7】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을 약정하면서 취급수수료 1%(10만원) 납부하고, 10일 경과 시점에 대출금 1,000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20만원(1,000만원×2%)를 납부

- 대출원본 : 990만원(대출 약정금액 1,000만원 - 취급수수료 10만원)
- 10일 이자 수취액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0/365\text{일} = 32,876\text{원}$
- 취급수수료 후취 : 상환원금 1,000만원 - 실제 대출원본 990만원 = 10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이율: $\{1,000\text{만원} \times (2\% - 1)\} / 990\text{만원} \times (365/30\text{일}) = \text{연 } 12.29\%$
※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30일 미만 대출기간은 30일로 간주하고 중도상환 금액의 최대 1%까지는 이자율 상한 계산시 제외
- 10일 이자수취액+취급수수료 : $(32,876\text{원} + 10\text{만원}) / 990\text{만원} \times (365/10\text{일}) = \text{연 } 48.99\%$
- 연간 총 이자율 = 연 12.29% + 연 48.99% = 연 61.28%

▶ 수취 이자율은 연 61.28%로 이자율 상한(연 34.9%)을 초과

【계산사례 8】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을 약정하면서 신용조회비용을 1만원 지급 후 대출받고, 6개월차 이자 납입기일에 약정만기 6개월을 남기고 전액상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약정금액 1,000만원×3%)을 납부

- 원본 : 1,000만원
※대부업법 상 “신용조회비용”인 경우, 이자율 상한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거래시 부과하더라도 원본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 한달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12) = 10\text{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이율: $\{1,000\text{만원} \times (3\% - 1)\} / 1,000\text{만원} \times (12\text{월}/6\text{월}) = \text{연 } 4\%$
- 1~ 6회차 : 10만원/1,000만원 = 월 1%(연 환산 12%)
- 연간 총 이자율 = $(20\text{만원} + 10\text{만원} \times 6) / 1,000\text{만원} \times (12\text{월}/6\text{월}) = \text{연 } 16\%$

▶ 수취 이자율은 연 16%로 이자율 상한(연 34.9%)을 초과하지 않음

【계산사례 9】

채무자가 여신금융기관과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을 약정하면서 신용조회비용을 1만원 지급 후 대출받고, 40일 만에 전액상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약정금액 1,000만원×3%)을 납부

- 원본 : 1,000만원
- ※대부업법 상 “신용조회비용”인 경우, 이자율 상한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거래시 부과하더라도 원본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 1회차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text{월}/12\text{월}) = 10\text{만원}$
- 2회차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40\text{일}-30\text{일})/365\text{일}\} = 32,877\text{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이율: $\{1,000\text{만원} \times (3\% - 1\%)\} / 1,000\text{만원} \times (365\text{일}/40\text{일}) = \text{연 } 18.25\%$
- 1회차 : $10\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1\%(\text{연 환산 } 12\%)$
- 2회차 : $32,877\text{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0.329\%(\text{연 환산 } 3.945\%)$
- 연간 총 이자율 = $(20\text{만원} + 10\text{만원} + 32,877\text{원}) / 1,000\text{만원} \times (365\text{일}/40\text{일}) = \text{약 } 30.38\%$

▶ 수취 이자율은 연 30.38%로 이자율 상한(연 34.9%)을 초과하지 않음

【계산사례 10】

고객 A가 고객 B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동 주택과 관련한 대출 1,000만원(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 채무를 함께 인수함. 이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은 고객 A에게 채무인수시점에 채무인수수수료 35만원을 징수

- 원본 : 1,000만원
- 1회차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 12\text{개월} + 35\text{만원}(\text{채무인수수수료}) = 45\text{만원}$
- 2회차 ~ 12회차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 12\text{개월} = \text{각 } 10\text{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회차 : $45\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4.5\%(\text{연 환산 } 54\%)$
- 2회차 ~ 12회차 : $10\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1\%(\text{연 환산 } 12\%)$
- 연간 총 이자율 = $(45\text{만원} + 110\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연 } 15.5\%$

▶ 총 이자율과 2~12회차 수취 이자율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1회차는 월 4.5%로 월이자율 상한(약 2.908%)을 초과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5

한도거래

가. 인출과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인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채결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이자율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예) '13.7.15일에 1년간 한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14.7.15일까지 연 39%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 받는다. 다만, '14년 7월 15일 이후 동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자율 상한은 연 34.9%를 적용받는다.

①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단,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최초 한도개설시 한도 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나. 상환이나 인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금전이 지급(인출)된 때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한다.

① 채권자가 한도대출 계약 이후 신용저하로 한도잔액을 변경할 수 있거나, 추가 대출시마다 별도의 절차(추가서류 제출 등)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채무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 별도로 지정된 충당순서가 없다면 우선 이행기가 도래한 순서로,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적용되는 이자율의 최고상한이 높은 순서)로 상환*한다(민법 제477조)

* (예) 대부업자 갑은 을과 '14.3.2 500만원의 한도약정 체결(인출시 별도절차 필요)

① '14.3.3. 200만원 대출 ⇒ 이자율 최고한도 연 39% 적용

② '14.5.1. 100만원 추가대출 ⇒ 이자율 최고한도 연 34.9% 적용

③ '14.9.4. 100만원 상환 ⇒ 연 39% 적용되는 채무 100만원 소멸(잔액 : 200만원)

【계산사례 Ⅱ】

대부업자가 500만원의 한도대출을 1년 만기, 연 32% 이율(만기 후취)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한도약정수수료로 50만원을 공제하여 수취하였다. 채무자는 450만원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본인 사용대출액 450만원과 대출취급시 취급수수료 50만원을 합친 500만원과 관련이자를 납부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450만원(= 대출 약정금액 500만원 - 약정수수료 5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 : 45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에 대한 이자 : $450\text{만원} \times 32\% = 144\text{만원}$
- 한도약정수수료에 대한 가산이자 : $50\text{만원} \times 32\% = 16\text{만원}$
 - 대출취급시 공제된 한도약정수수료(50만원)에 대한 이율을 계산한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실제 사용대출액 이율 : $144\text{만원} / 450\text{만원}(\text{사용금액}) = \text{연 } 32.0\%$
- 한도약정수수료 이율 : $50\text{만원} / 45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 \text{연 } 11.11\%$
- 한도약정수수료 가산이율 : $16\text{만원} / 45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 \text{연 } 3.55\%$
- 연간 총 이자율 : $\text{연 } 32.0\% + \text{연 } 11.11\% + \text{연 } 3.55\% = \text{연 } 46.66\%$

▶ 총 이자율은 연 46.66%이므로 연이자율 상한(연 34.9%)를 초과

다. 여신금융기관의 한도거래 인식도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와 동일하다

【계산사례 12】

여신금융기관이 1,000만원의 한도대출을 연 12%의 이율(만기 후취)로 1년 약정하고 대출시 10만원의 한도약정수수료로 직접 공제하였다. 채무자는 대출 초일에 500만원을 인출 사용하고 만기일에 본인 사용액 500만원과 한도약정수수료 10만원을 합한 510만원과 관련이자를 납부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990만원(=대출약정금액 1,000만원 - 약정수수료 1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 : 50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에 대한 이자 : $500\text{만원} \times 12\% = 60\text{만원}$
- 한도약정수수료에 대한 가산이자 : $10\text{만원} \times 12\% = 12,000\text{원}$
 - 대출취급시 공제된 한도약정수수료(10만원)에 대한 이율을 계산한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실제 사용대출액 이율 : $60\text{만원} / 500\text{만원}(\text{사용금액}) = \text{연 } 12.00\%$
- 한도약정수수료율 : $10\text{만원} / 99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 \text{연 } 1.01\%$
- 한도약정수수료 가산이율 : $12,000\text{원} / 99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 \text{연 } 0.12\%$
- 연간 총 이자율 : $\text{연 } 12.00\% + \text{연 } 1.01\% + \text{연 } 0.12\% = \text{연 } 13.13\%$

▶ 총 이자율은 연 13.13%이므로 연이자율 상한(연 34.9%)를 초과하지 않음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계산사례 13】

여신금융기관이 5월 1일에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24%, 약정기간 1년, 월이자 후취)을 취급하였다. 채무자는 한도대출 실행일부터 6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매월 후취이자는 별도 납입하였다. 이후 채무자는 대출취급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1일에 한도사용금액 600만원, 월이자 2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한도약정을 해지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1,00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 : 600만원
- 실제 사용대출액에 대한 이자 : $600\text{만원} \times 24\% \times (6\text{월}/12\text{월}) = 72\text{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실제 사용대출액 이율 : $72\text{만원}/600\text{만원}(\text{사용금액}) \times (12\text{월}/6\text{월}) = \text{연 } 24\%(\text{월 } 2\%)$
- 중도상환수수료 이율 : $\{30\text{만원} - (600\text{만원}(\text{실제 상환금액}) \times 1\%)\} / 1,00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times (12\text{월}/6\text{월}) = \text{연 } 4.8\%(\text{월 } 0.4\%)$
 - 중도상환수수료 중 실제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대출기간(6개월)에 안분계산하여 이율에 가산
- 연간 총 이자율 : $\text{연 } 24\% + \text{연 } 4.8\% = \text{연 } 28.8\% (\text{월 } 2.4\%)$

▶ 총 이자율은 연 28.8%로 연이자율 상한(연 34.9%)를 초과하지 않음

가. 지급되지 않은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거나 원금에 이자를 산입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약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 가능하다.

나. 다만, 원래의 원금을 기초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다면, 당해 계약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계약이다.

【계산사례 14】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매월 2.8%씩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대부업법상 월 이자상한액 : 약 29,083원($100\text{만원} \times \text{연 } 34.9\% / 12\text{월}$)
- 1회차 이자 : 28,000원($100\text{만원} \times \text{월 } 2.8\%$)
- 2회차 이자(1회 이자 미납시) : $(100\text{만원} + 28,000\text{원}) \times \text{월 } 2.8\% = 28,784\text{원}$
- 3회차 이자(1, 2회 미납시) : $(100\text{만원} + 28,000\text{원} + 28,784\text{원}) \times \text{월 } 2.8\% = 29,589\text{원}$

- ▶ 1~2회차 이자는 월 이자상한액(29,083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3회차 이자는 29,590원으로 월 이자상한액을 초과하여 이자율 상한 위반임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7

원리금 균등상환 및 원금 균등상환

※ 이자계산기 활용 필수(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

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일수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포함된다.

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다음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원리금 균등상환 엑셀 함수식>

○ 원리금 균등상환 함수식 = Rate(Nper, Pmt, PV, FV) × 365(또는 12)

- Nper(총상환횟수): 100일동안 상환시 → 100, 1달 한번 12회 상환시 → 12
- Pmt(매회 상환원리금): 매회 12,000원 상환시 → 12,000
- PV(대부원금): 반드시 (-) 부호를 붙임
- FV(만기시 잔금): 0을 입력

※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일수대출은 “365”를 곱하고, 월수대출은 “12”를 곱함

【계산사례 15-1】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상환 받음

▶ 연 이자율 = Rate(100, 12000, - 1000000, 0)×365일 = 136.2%로 이자율 상한 위반

【계산사례 15-2】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원씩 1년간 상환 받음

▶ 연 이자율 = Rate(12, 120000, - 1000000, 0)×12개월 = 73.3%로 이자율 상한 위반

②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선이자(선취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 후의 대부업법상 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이자율을 계산한다.

【계산사례 16】

대출금 100만원, 취급수수료 3%, 정상이자율 12%, 대출기간 1년, 매월 88,848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도록 계약한 경우

* 이자계산기 참조(정상이자율을 기준(취급수수료 제외)으로 산출한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액)

- 원금 : 100만원 - (100만원×3%) = 97만원
- 매월 납입 원리금 : 88,848원
- 1년간 총 수취금액 : 88,848원×12개월 = 1,066,176원

▶ 연 이자율 = $\text{Rate}(12, 88848, -970000, 0) \times 12 \text{개월} = \text{연 } 17.82\%$ 으로 이자율 상한 위반이 아님

- ③ 원리금 균등상환시에는 계약서에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표시한다.
- ④ 원리금 균등상환(일수대출 등)의 경우, 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과도한 이자수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시] 일수대출시 일별상환 최고액 (연 34.9% 가정)

기간 금액	100일	150일	200일	250일	300일	365일
100만원	10,490원	7,159원	5,495원	4,499원	3,835원	3,246원
150만원	15,735원	10,739원	8,243원	6,748원	5,753원	4,870원
200만원	20,981원	14,318원	10,991원	8,998원	7,671원	6,493원
250만원	26,226원	17,898원	13,739원	11,247원	9,589원	8,117원
300만원	31,471원	21,478원	16,487원	13,497원	11,507원	9,740원

☞ (예) 100만원을 1년 동안 연 34.9% 이자율로 대부할 경우 수취가능한 이자총액 :

- ① 일시상환 조건 : 349,000원
- ②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 184,790원(=일 원리금 상환액 3,246원× 365일 - 원금 100만원)

나.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 ①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선이자(선취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 후의 대부업법상 원본을 균등하게 나눈 후, 균등 상환시의 이자율을 계산한다.
- ② 다만, 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고려할 때 선이자 공제시 과도한 이자수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계산사례 17】

대출금 100만원, 취급수수료 3%, 정상이자율 12%, 대출기간 1년, 매월 원금 균등상환 계약한 경우

- 원본 : 100만원 - (100만원×3%) = 97만원
- 대부업법상 매월 납입원금 : 97만원/12개월 = 80,833원
- 매월 납입 이자 : (산식) 고객납입 원리금 - 80,833원
 - 1차월 납입 이자액 : 93,333 - 80,833 = 12,500원
 - * 93,333(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만원/12) + 10,000(=100만원×12%/12)
 - 2차월 납입 이자액 : 92,500 - 80,833 = 11,667원
 - * 92,500(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만원/12) + 9,167(=916,667원×12%/12)
 - ...
 - 12차월 납입 이자액 : 84,166 - 80,833 = 3,333원
 - * 84,166(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만원/12) + 833(=83,333원 × 12%/12)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차월 : 이자액 12,500원/대출원금 970,000원 = 월 1.289%(연 환산 15.468%)
- 2차월 : 이자액 11,667원/대출원금 889,167원(= 97만원-80,833원) = 월 1.312%(연 환산 15.744%)
- ...
- 12차월 : 이자액 3,333원/대출원금 80,833원 = 월 4.123%(연 환산 49.476%)

▶ 12차월 이자율이 월 이자상한(약 2.9083%)을 초과하여 이자율 상한 위반임

[참고] 대출상환 방식별 지급구조

(대출금 100만원, 선이자 10만원, 이자율 연12%, 대출기간 10개월, 月 이자납입주기)

구분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지급액	상환 원금	이자	이자율	지급액	상환 원금	이자	이자율	지급액	상환 원금	이자	이자율
1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78,457	27,125	3.013%	110,000	90,000	20,000	2.222%
2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80,822	24,760	3.013%	109,000	90,000	19,000	2.345%
3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83,258	22,324	3.013%	108,000	90,000	18,000	2.500%
4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85,767	19,815	3.013%	107,000	90,000	17,000	2.698%
5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88,352	17,230	3.013%	106,000	90,000	16,000	2.962%
6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91,015	14,567	3.013%	105,000	90,000	15,000	3.333%
7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93,758	11,824	3.013%	104,000	90,000	14,000	3.888%
8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96,584	8,999	3.013%	103,000	90,000	13,000	4.814%
9차월	10,000	-	10,000	1.111%	105,582	99,494	6,088	3.013%	102,000	90,000	12,000	6.666%
10차월	1,010,000	900,000	110,000	12.222%	105,582	102,493	3,089	3.013%	101,000	90,000	11,000	12.222%
합계	1,100,000	900,000	200,000		1,055,821	900,000	155,821		1,055,000	900,000	155,000	

8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자납입주기는 이용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 (카드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중도상환시 이자납입주기는 실제 사용기간으로 본다.

* (예) 카드대금 결제일이 매월 25일인 고객의 이자 납입주기 :

- ① 7월 2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고 8월 25일에 전액 상환한 경우, 54일 (7월 3일~8월 25일)
- ② 7월 31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고 8월 25일에 전액 상환한 경우, 25일 (8월 1일~8월 25일)

다. 신용카드 카드론, 할부금융 등 사전에 이자 납입일을 약정한 상품은 사전 약정한 이자 납입주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 (예) 7월 1일 할부금융 1,000만원을 받은 고객의 이자 납입주기 :

- ① 이자납입일을 매월 25일로 약정하여 1차월 이자를 7월 25일에 납입하기로 한 경우, 1차월 25일(25일 이자율 제한 약 2.390%), 2차월 이후 월(月)로 본다.(月 약 2.908%)
- ② 이자 납입일을 매월 5일로 약정하여 1차월 이자를 8월 5일에 납입하기로 한 경우, 1차월 35일(이자율 제한 35일간 약 3.346%), 2차월 이후 월(月)로 본다.(月 약 2.908%)

【계산사례 18】

고객 A는 7월 1일 B카드사와 현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정상이자율 연 25%, 취급수수료 0.6% 후취, 약정기간 3년), 체결과 동시에 100만원을 사용하고, 7월 7일 사용대출액 100만원과 관련 이자 전액을 중도상환(중도상환수수료 0.4% 수취)하고 계약을 해지(결제일 7월 21일)

- 대출원본 : 100만원
- 취급수수료 : 100만원×0.6% = 6,000원
- 정상이자액 : 100만원×25%×(6일/365일) = 4,110원
- 중도상환수수료 : 100만원×0.4%= 4,000원
- 이자 납입주기 : 6일(중도 상환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대출원본에 따른 정상이자율(6일) : 4,110원/100만원 = 0.411%(연 환산 25%)
- 취급수수료(6일) : 6,000원/100만원 = 0.6%(연 환산 36.5%)
- ※ 여신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중도상환금액의 최대 1%까지는 이자율 상한 계산시 제외 → 동 중도상환수수료가 연 0.4%로 제외
- 연간 총 이자율 : 연 25% + 연 36.5% = 연 61.5%

▣ 수취 이자율이 연 6.15%로 연 이자율 상한(연 34.9%)를 초과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수금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114번 ‘특수금융’ 정의 참조)

- ① PF(Project Finance) :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② OF(Object Finance) :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③ CF(Commodities Finance)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원유, 금속, 농작물 등)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구조화된 단기 여신
- ④ IPRE(Income-Producing Real Estate) :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⑤ HVCRE(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 :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와 같은 현금흐름의 저조(미분양 등)로 인해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으로, 건설 관련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
- ⑥ 기타 인수금융을 포함한 신디케이션 론(syndication loan)으로서 주선수수료, 참여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여신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선수수료는 PF사업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하여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참여은행을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대출금이 원활히 인출되어 상환될 때까지 여신의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서비스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자문수수료는 PF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나 계획 등을 검토하고 금융 및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는 등 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③ 참여수수료는 신디케이션의 참여기관으로서 여신을 제공하는 등 계약에 명시된 대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④ 대리은행수수료는 신디케이션의 대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자금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 PF 대출 이자율 계산시 수수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선수수료는 대출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서비스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므로 전체약정금액(주선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수수료율(이자율)을 산출하고 대출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 단, 이것은 주선수수료와 참여수수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② 자문수수료는 대출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므로 전체약정금액(자문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수수료율(이자율)을 산출하고 대출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 다만, 용역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참여수수료는 대출 참여분(참여 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취급시점의 이자로 계산한다.
 - 다만, 참여수수료를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에는 선이자로서 참여 약정금액에서 공제되며, 참여 약정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 원본으로 간주되고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한다.
- ④ 대리은행수수료는 전체 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여 수취하는 납기에 이자율을 가산한다.

별첨 1. 대부업상 이자율 계산사례

【계산사례 19】

A은행은 “알파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전체 약정금액은 1조원이며 A은행은 1,000억원의 PF대출을 참여하기로 하였다. 대출약정 기간은 3년이며 대출이자율 연 8%로 매월 후취, 자문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전체 약정금액에 대하여 각각 1%를 대출시점에 수취하고, 참여수수료는 참여약정금액의 1%, 대리은행수수료 5억원을 대출 1개월 후에 후취하였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이자율 상한 적용이자율의 산출(PF 대출기간 3년)

(단위 : 억원)

구 분	약정 금액	수입이자/수수료				적용 이자율 ^{주)}			
		약정율 (%)	수취 방법	금액 (1년)	관련 기간	대부업법상 원본	적용방법	연이자율 (상한 34.9%)	1차월 이자율
참여수수료	1,000	1.00	일시	10	3년	990	일시 인식	1.01%	1.01%
PF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1,000	8.00 (24.00)	연율	80 (240)	3년	990	약정기간중 인식	8.08% (24.24%)	0.67% (2.02%)
대리은행 수수료	10,000	0.05	일시	5	3년	(10,000)	납입당기 인식	0.05%	0.05%
자문수수료	10,000	1.00	일시	100	3년	(10,000)	대출기간 안분	0.33%	0.03%
주선수수료	10,000	1.00	일시	100	3년	(10,000)	대출기간 안분	0.33%	0.03%
합계	-	-	-	295			-	9.80% (25.96%)	1.79% (3.14%)

- 1차월 이자율(이자납입주기 1개월) : 월 1.79%(연 환산 9.80%)

▶ 수취이자율은 월이자율 상한(약 2.908%) 및 연이자율 상한(34.9%)를 초과하지 않음

[별첨 2] 관련 참고 법령

별첨 2. 관련 법령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다.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 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 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마.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 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바.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 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 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 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 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 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 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 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별첨2. 관련 법령

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파.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하.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거.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러.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머.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버. 법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서.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어. 삭제 <2009.8.5>				
저. 삭제 <2009.8.5>				
처. 삭제 <2009.8.5>				
커. 삭제 <2009.8.5>				
터.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퍼.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노. 삭제 <2011.11.30>				
도.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별첨 2. 관련 법령

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로. 법률 제93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1호	2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2호	50	250	500
다. 삭제 <2013.6.11>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20	100	200
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50	250	500
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50	250	500
사.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2호	200	500	1,000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0	500	1,000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4호	50	250	500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4호	50	250	500

별첨 2. 관련 법령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5호	50	250	500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5호	200	500	1,000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6호	50	250	500
하.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법 제21조제1항 제6호의2	50	250	500
거.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7호	50	250	500
너.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8호	200	500	1,000
더.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9호	200	500	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0호	50	250	500
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서.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1호	500	1,000	1,500
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9호	50	250	500
저.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2호	200	500	1,000
처.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10호	50	250	500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99>부터 <418>까지 생략

이자제한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27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6.11.,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단비교표 (법률-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4호, 2014.5.20., 일부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2014.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 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	

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

	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감경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	---